

2012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 방향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일 정 표

- ▣ 일시 : 2012년 6월 28일(목) 15:00 ~ 6월 29일(금) 13:30
- ▣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부산 해운대)
- ▣ 주제 :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 방향과 과제

• 6월 28일(목)

시 간	일 정	장 소
14:30~15:00	등 록	
15:00~15:30	개회식 - 개회사 : 함인석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입 총장 소개 - 주요현안 경과 보고	그랜드볼룸(2F)
15:30~16:10	기조강연 : 홍승용 부의장(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대학의 과제-총장의 책문(策問)과 리더십」	
16:10~16:30	Coffee Break	
16:30~17:30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18:00~19:30	만찬	

• 6월 29일(금)

시 간	일 정	장 소
09:00~09:40	특별위원회 분과 세미나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사학법대책위원회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국제화대책위원회	해당 세미나실 (별도안내)
09:40~09:50	회의장 이동 및 Coffee Break	
09:50~10:25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그랜드볼룸(2F)
10:25~11:40	고등교육 정책제안 발표 및 토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 사립대학총장협의회	
11:40~12:00	객실 Check out	
12:00~13:30	• 대학 및 대학생 관련 정책설명(국토해양부) • 오찬(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그랜드볼룸(2F)

※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일정 중, 아래와 같이 총장협의체 개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회의일시		회의장소
	6.28(목)	6.29(금)	
사립대학총장 협의회	-	07:00~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랜드볼룸 • 시드니 1~3번룸
신학대학총장 협의회	18: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랜드볼룸
교육대학총장 협의회	-	08:00~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실리룸

목차



개회사	9
기조강연	
○ 대학의 과제-총장의 책문(策問)과 리더십	1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41
특별위원회 분과회의	47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51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65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75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83
○ 사학법대책위원회	99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107
○ 국제화대책위원회	123
고등교육 정책제안 발표 및 토론	13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137
○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149
○ 사립대학총장협의회	163

개회사

함 인 석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회사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을 비켜 세우며 벚꽃망울이 맺히던 지난 4월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식을 갖던 일이 엇그제처럼 느껴지는데, 대학 캠퍼스에는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가운데 벌써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하계 방학을 맞고 있습니다. 회원대학 총장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학 경영이라는 한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총장님으로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쏟으신 그 열정과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서 회원대학 총장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오늘 “대학의 과제 - 총장의 策謀과 리더십”을 주제로 흔쾌히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님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에 대하여 사회적 책무성과 함께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기 혁신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우리 대학들은 그 여론과 지지 속에 특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대적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온 우리 대학들이지만, 지금 소위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서 청년 실업문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같은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 위기 국면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련의 위기들은 대학 외부로부터의 영향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거나, 대학내 구성원들이나 대학들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내부의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국립대들은 대학 선진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총장 직선제 개선이라는 대학 지배구조의 개선과 학사제도의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을 앞에 두고 학내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대립하는 등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어냄으로써 구성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대학은 물론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해 나가는 자세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대학의 부단한 자기 혁신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해안을 대학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총장 직선제 개선 문제는 대학 구성원들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자율적 의사에 의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갈등과 반목이라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더 이상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양보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과 국민들 모두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들이 과연 ‘진리의 전당’이나 ‘지성의 요람’으로 불릴 수 있는지 진지하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 학생과 대학은 저마다 생존을 위해 무한질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목을 매고 있으며, 대학은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등 신자유주의적 광풍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주요 학사운영을 결정하는 등의 자세와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대학의 구조적 문제점들과 갖가지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학을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른 부문에까지 신뢰의 기반이 골고루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일선 대학들이 뜻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주체들이 서로 가슴과 머리를 맞대어 소통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어 슬기롭게 현안 과제들을 극복해 낸다면,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위기들은 호기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일선 대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대교협의 위상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교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 시대의 창조적인 지식선도대학을 건설해 나갈수록 국가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대학들도 각 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여건이나 목표에 따라 각기 특성화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수록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재정 위기로 야기된 세계경제의 불안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가계의 파폐에 따른 대학생과 그 학부모의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사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 투자가 GDP의 1.3%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즉, OECD 국가는 전체적으로 고등교육비의 68.9%를 부담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22.3%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문제는 그동안 민간부문에 떠넘겨온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일부 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리고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해온 반값 등록금 실현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반값 등록금 실현을 포함하여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해 봅니다. 국가의 발전 척도는 바로 그 나라의 대학들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 문제와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해소를 비롯하여 결코 녹록치 않은 각종 정책 현안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안들은 고등교육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보다 큰 안목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대학을 효율이라는 시장의 논리와 잣대로만 바라보면서 불편한 오해와 편견을 쌓기보다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각종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와 능동적 참여를 통해 우리 대학들의 상생과 도약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대학 총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과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의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자들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하계 대학총장세미나가 알차고 진지하게 진행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함 인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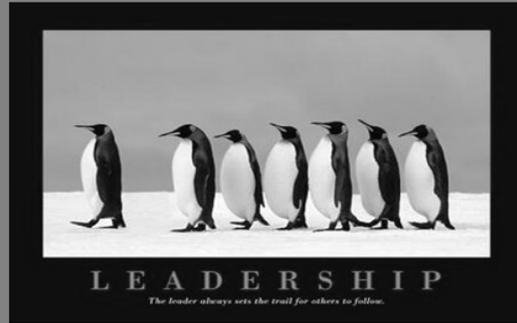
기조강연

대학의 과제 - 총장의 책문(策問)과 리더십

홍 승 용 부의장(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12.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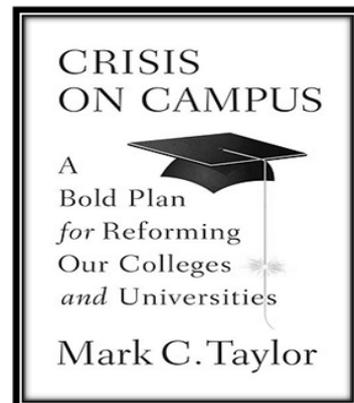
대학의 과제 : 총장의 策問과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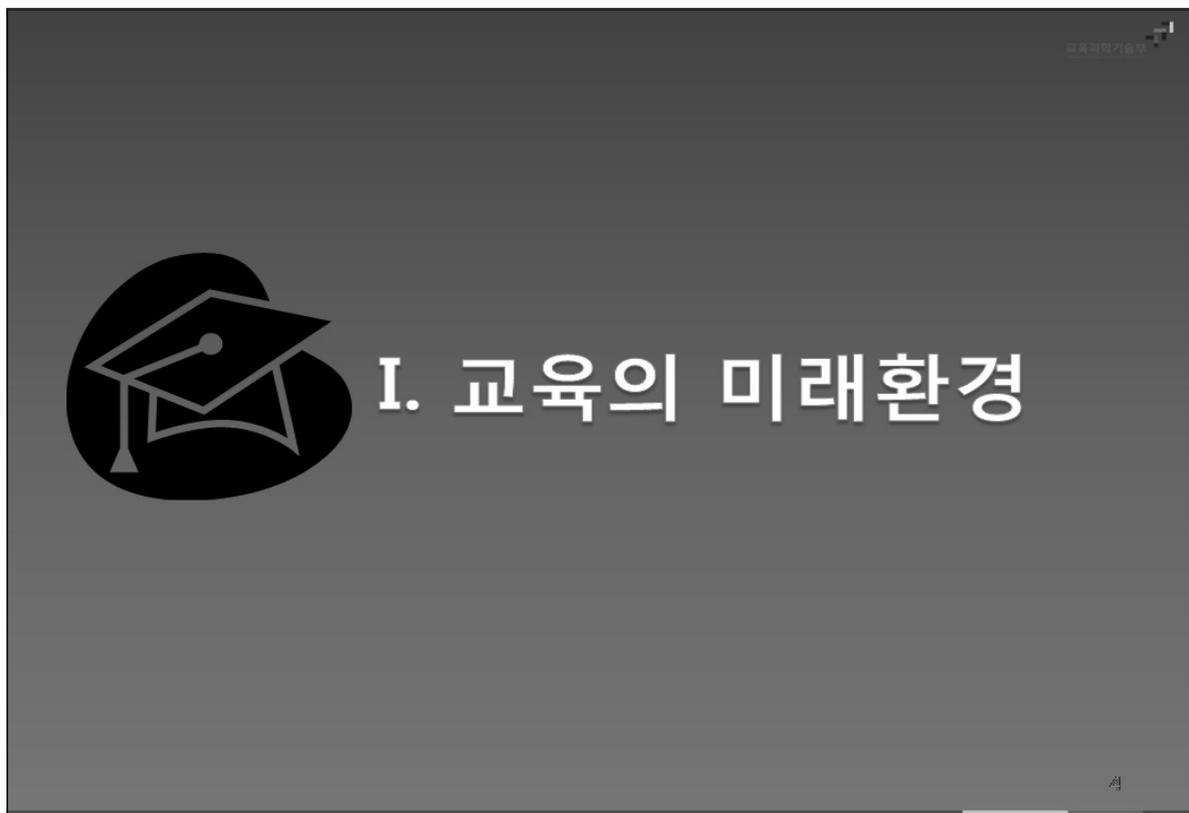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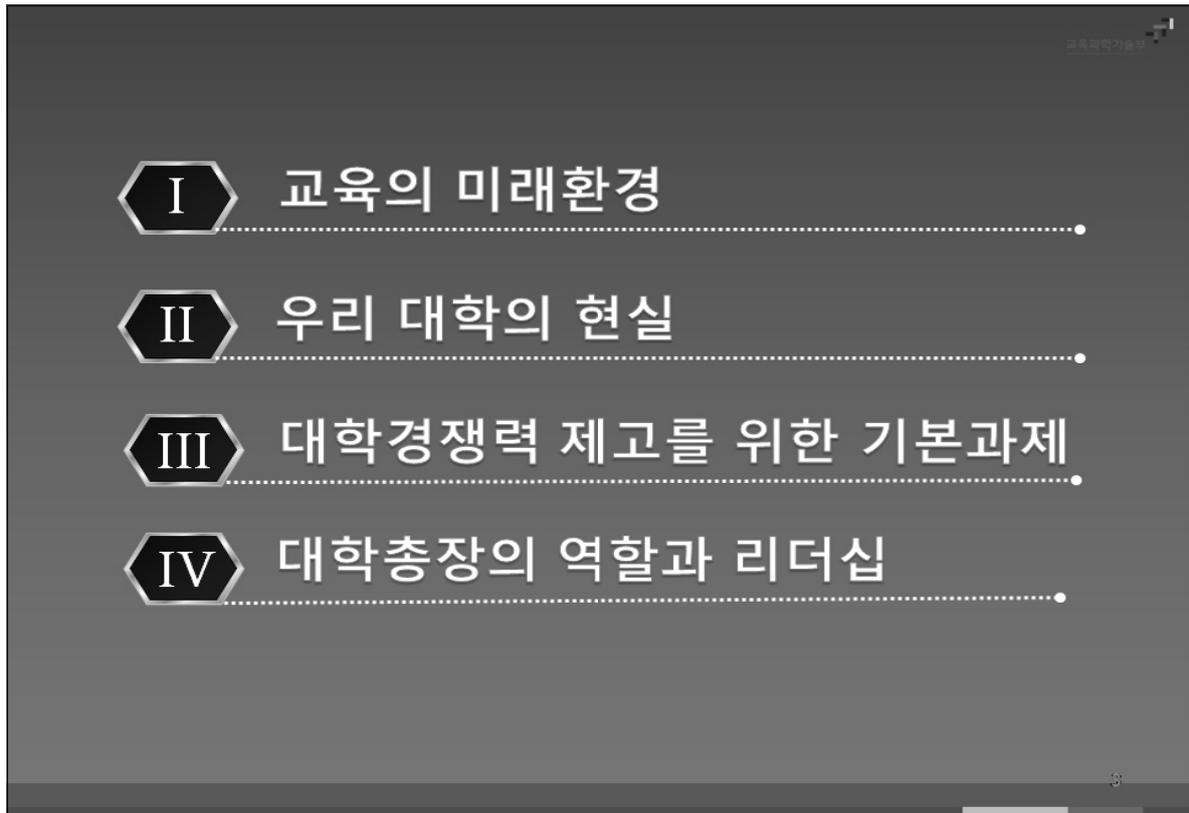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홍승용

21세기 사회의 New Normal “危機”

- 라이프 사이클 'B to D'
- Crisis, Choice, Chance
- 위기경영전략 - 앰블런스경영, 하인리히법칙, 민첩성 & 유연성
- 護疾忌醫 → 有備無患
- M. 테일러의 논점 - U. Bubble > F. Bubble, 대학유동성 위기, 테뉴어 제도, 취업교육





1. 미래사회의 특징과 키워드

가속의 시대	○ 속도의 충돌, Exponential, Post-Human, 암기보다는 Search
평등의 시대	○ 인터넷, 집단지성, 사라진 영웅, Longtail
융합통섭의 시대	○ NBIC, 하이브리드, 매시업, 인터랙티브, 다문화시대, Fusionist, Generalist
감성의 시대	○ 하이 컨셉 · 하이 터치, 디자인, 스토리, 우뇌형 사고, T자형 인재, Hyper-Human, 'Or'형이 아닌 'And'형 인재
자아의 실현	○ 자기계발, 평생학습, 행복 찾기, 이웃에 대한 배려 · 관용

5

2. 미래의 직업

“10년 후에는 현존 직종의 80%가 소멸 또는 진화되며,
대학에서 미래사회 예측과 관련 지식 습득이 중요함 - 미국 정부 -

○ **미래유망직업기준 - '고용증가 가능성' + '높은 성장률' + '높은 수입'**

○ 「유엔미래보고서 2025」 유망직업 - 박영숙 공저

- 1) 경제 · 경영 분야 - 최고경영관리자(CXO), 브레인 퀀트
- 2) 의료 · 복지 분야 - 복제 전문가, 기억수술전문외과의
- 3) 환경 · 에너지 분야 -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 4) 로봇 분야 - 증강현실 전문가, 홀로그래피
- 5) 문화 예술 분야 - 특수 효과, 내로케스터
- 6) 여가 생활 분야 - 아바타 관계 관리자, 미래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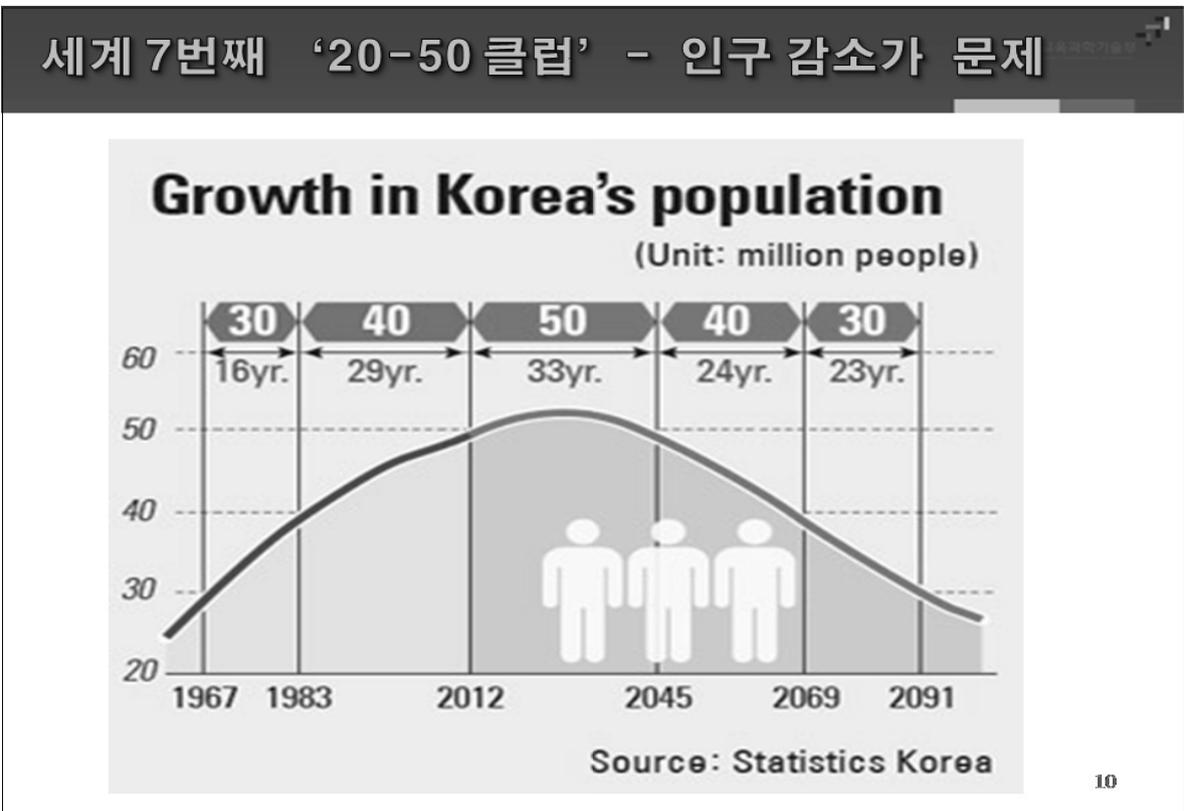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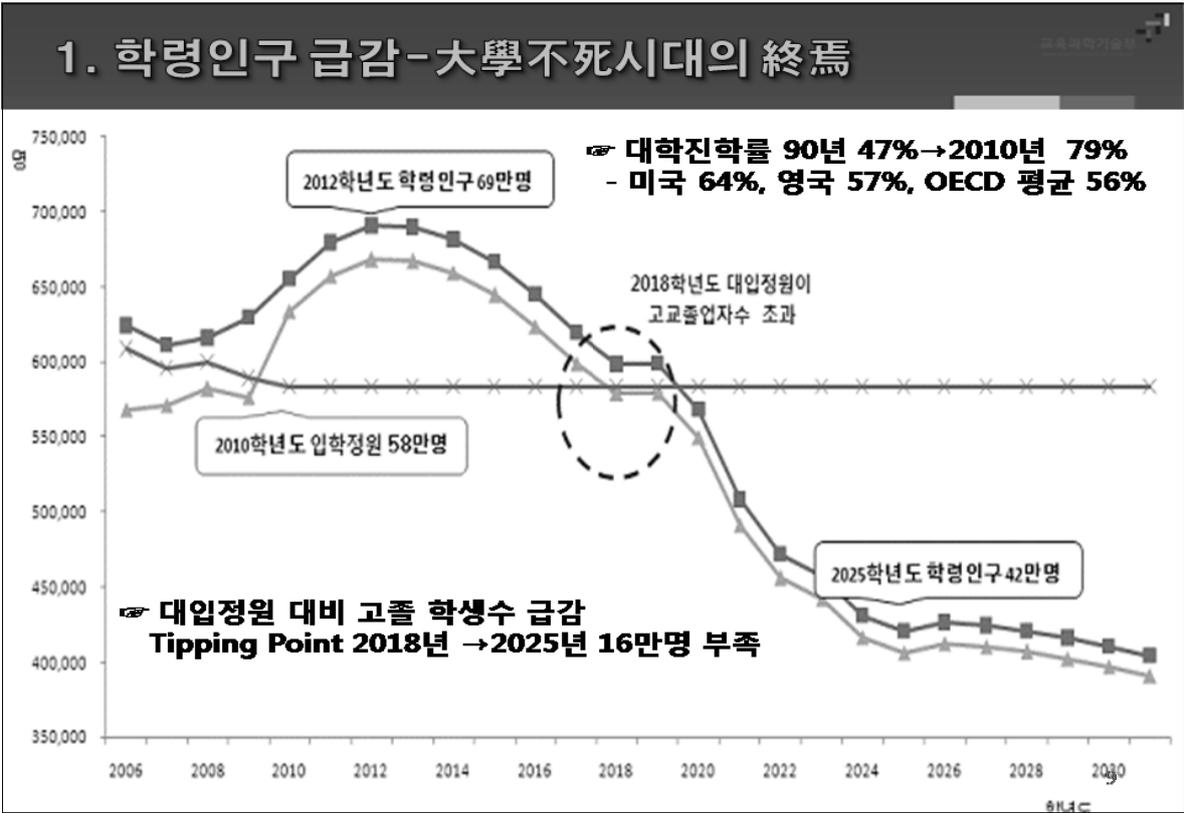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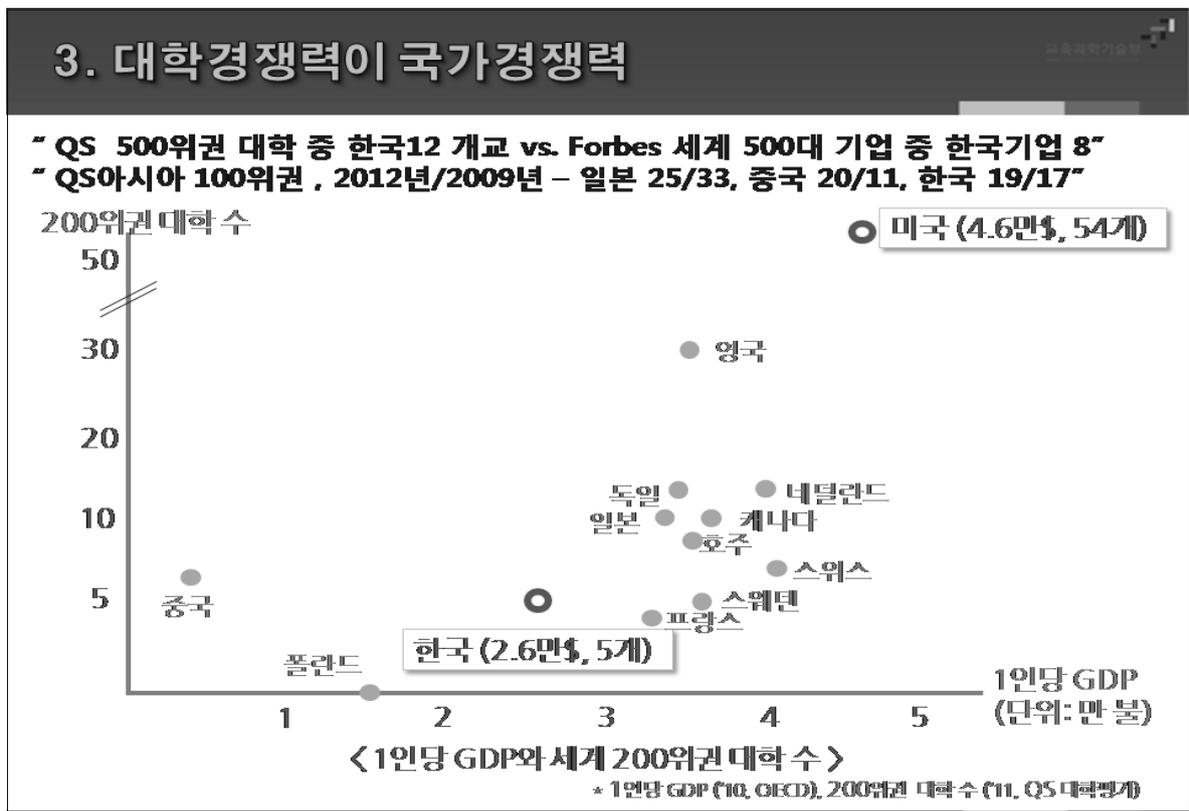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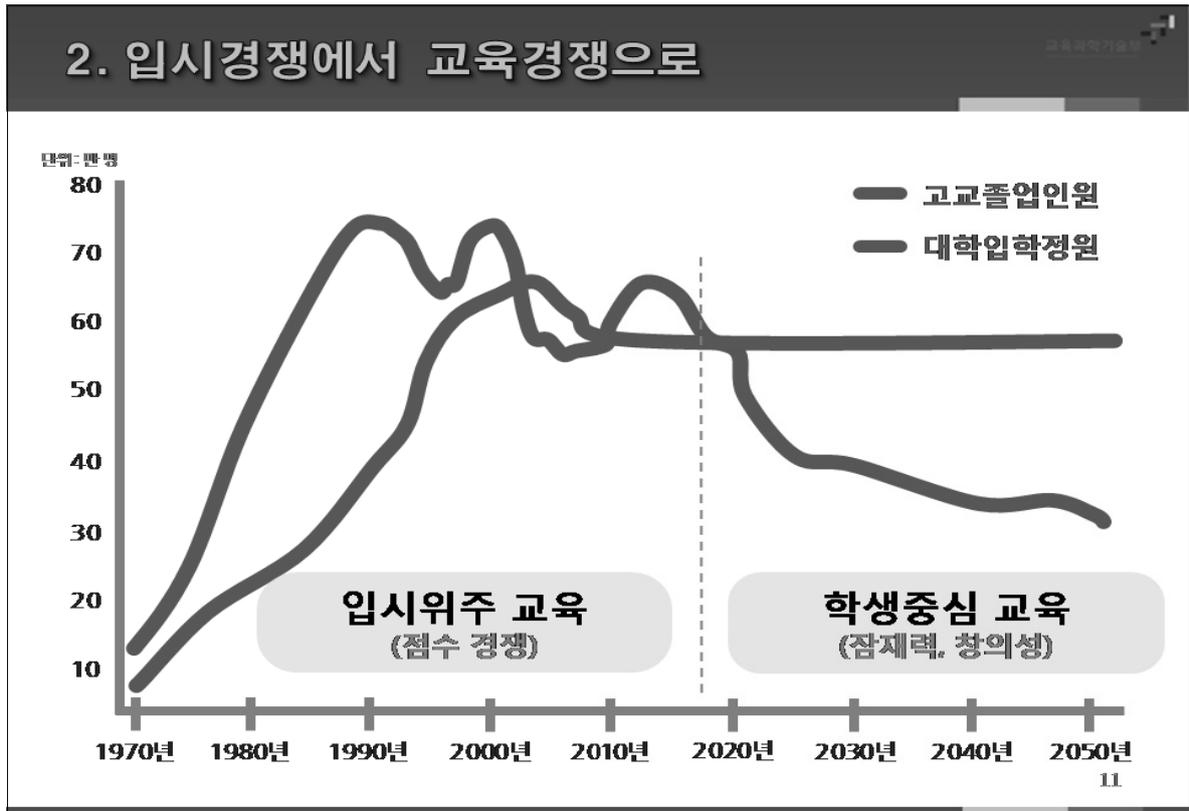
3.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

◦ **Willis W. Harman 박사 Fan Scenario**
 -영리대학, Satellite U, 다문화대학, Corporate Owned U, All -Have -Access U.
 ☞ 교육인구 변화 → 교육체제(인력수급체제 & 교육기회 수급체제) 변화 → 교육기능 변화

The Harman Fan contains possible future states of universities. They have been organized in chronological order from sooner to later in the evolution process. By clicking on each of the states, a description can be obtained.
[Sample scenario >>](#)

II. 우리대학의 현실





4. 국가경쟁력 보다 낮은 대학경쟁력

■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수준

〈표〉 IMD 국가 경쟁력과 대학의 사회요구부합도 순위 비교(총 59개국)

국가	싱가포르	홍콩	미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캐나다	대만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한국
국가경쟁력	3	1	1	5	6	4	7	8	9	10	22
대학경쟁력	1	23	10	3	7	3	5	20	21	11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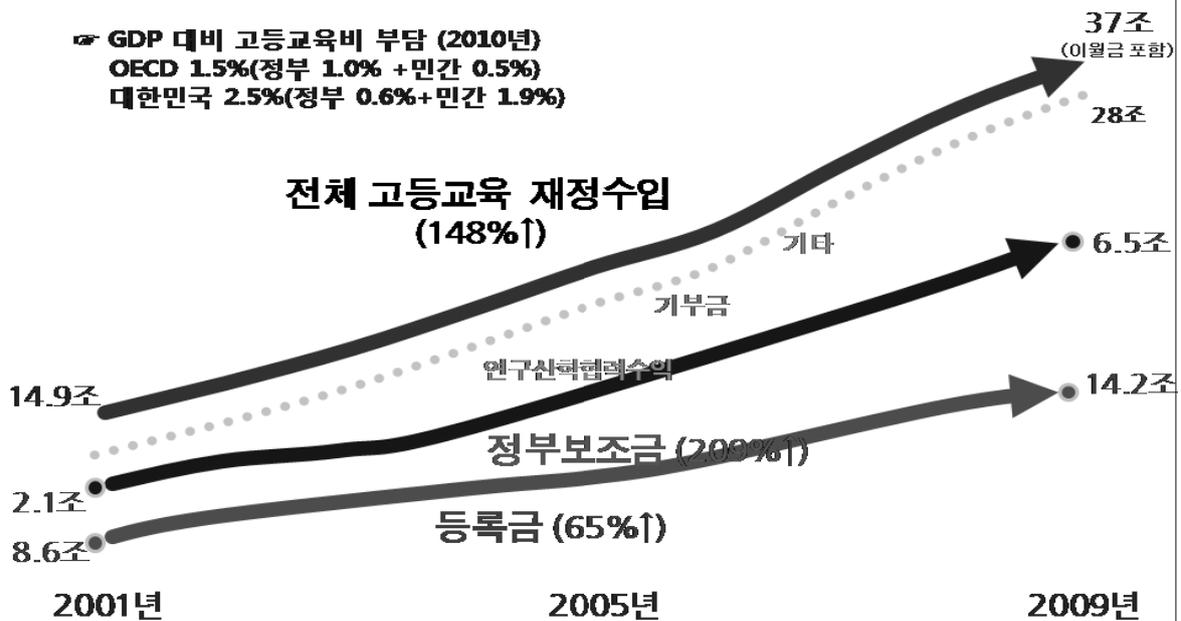
* 자료 : IMD(2010).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표〉 WEF 국가 경쟁력과 고등교육의 시스템의 질 순위 비교(총 142개국)

국가	스위스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국가경쟁력	1	5	2	3	8	4	6	9	12	7	24
대학시스템의 질	1	26	2	8	16	3	17	36	7	10	55
대학 - 산업체 협력	1	3	6	5	15	4	13	16	11	8	25

* 자료 : WEF(2010).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5. 등록금 위주의 고등교육비 재정수입 다변화



< 고등교육 재정수입 구조 추이(교비회계+산단회계) >

6. 등록금 - 정부재정지원 확대와 구조조정 촉진

■ 등록금 부담완화 및 부실대학 구조조정 요구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위한 정부재정 투자 확대와 동시에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표〉 주요국 등록금 현황

(단위: PPP)

구분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국공립 등록금	5,943	4,717	4,432	4,678	4,035	3,693	1,178	1,195	821	179~1206
사립 등록금	21,979	8,519	6,635		7,902		4,769	4,355	821	
순위	1	2	3	4	5	6	7	8	9	10

* 자료 : 2010 OECD 교육지표,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환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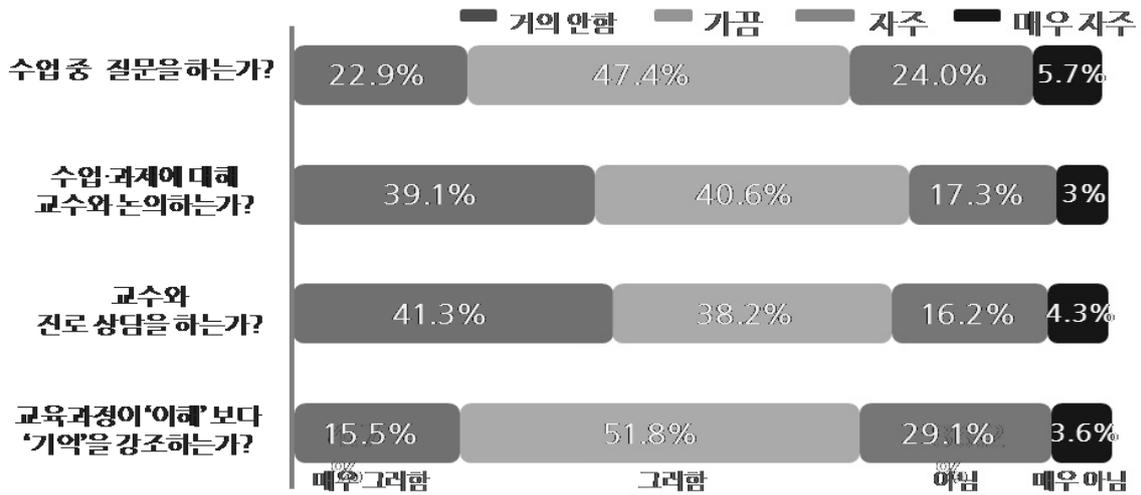
■ Hard Times & Great Expectations -Charles Dickens-

“대학재정 확충은 어렵고, 대학생 교육의 질 기대는 높아지고”



7. 부실한 학부교육

“질문도 못하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4.0시대를 이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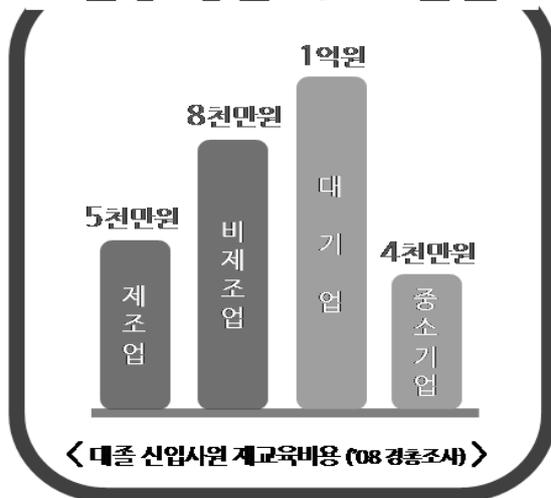


< 한국대학생 2019명 학습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10, KED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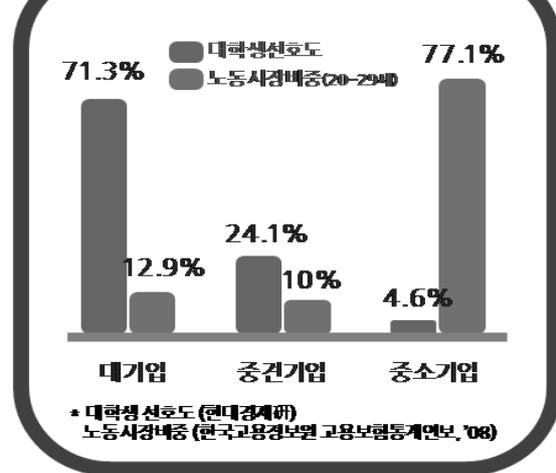
17

8. 대학교육과 산업수요의 Mismatch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비용
1인당 평균 6,088만원



고학력 청년층의 선호도
vs
일자리 현황



18

9.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 위기 or 기회?!

<유학생 및 유학연수수지 현황>

구분		2004	2011
해외 유학생수 (천명)	대학	188	289
	학위과정	106	164
국내외국인 유학생수	대학	17	90
	학위과정	11	64
유학연수수지 (백만 불)	수지	△ 2,477	△ 4,414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가>

국가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비율(%)	66	5	4	3

<국내 학생 해외유학 국가>

국가	미국	중국	호주	필리핀	일본
비율(%)	25	22	12	10	9

글로벌 인재전쟁 (War on Talent)



● 2020년까지 글로벌 인재유치 '한·중·일 三國戰'
- 중국 50만 명, 일본 30만 명, 한국 20만 명

10. 달리는 주요 선진국의 대학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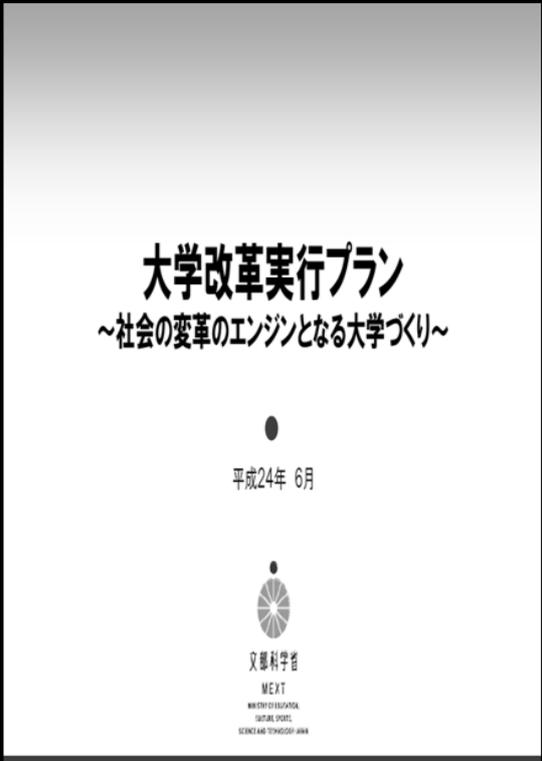
내용	일본	미국	영국	호주
구조개혁사업	평가인증 · 국립대학법안화 · 시학경영제정	· 평가인증 및 연경 제도 · 배제내역주 구조개혁3단계평가: 1단계 수렴제표보고서→2단계 경부와대학 MOU→3단계 실행평가기준등급	· 1992년 계속 고등교육개혁 법안 · HEFCE(영국 고등교육재정청) 설립 · 2008년 '새로운 대학의 도전' 영국의 재원 사용 실시	· 다양성 및 구조조정 기금
추진 주체	· 중앙정부	· 대학 · 민간 협의회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정부
추진 배경	· 시장경쟁력대응에 따른 경쟁시시스템의 구조개혁	· 고등교육 국제 환경 변화와 교육소비자 제왕적연결 권력 체계 요구	· 영국대학의 경쟁력 강화 · 대학의 사회경제 공헌 확대	· 대학경쟁력 강화
추진 목적	· 대학경쟁력 강화	· 대학질 권리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공립대학 경영효율화, 사회경제적 필요 부합 고등교육 체계 개편	· 교수학습수월성 유지 · 대학 참여율 향상 · 연구 활동 강화 · 고등교육의 사회경제 공헌 확대	· 대학특성화 · 다양성 · 노동시장의 변용성 계고
추진 내용	· 대학의 자체평가 및 제3자 평가 ·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 · 시학 경영제권 및 권력	· 대학인증평가제도 개선 · 공립대학 운영 체계 합리화 및 효율화 · 공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 성과 계고	· 연원계 대학제도 확립 · HEFCE 통한 재정지원과 교수 연구 평가 강화 · 제왕 특성을 고려한 새 대학 설립	· 매년 1회씩 지원사업선경 · DEER에 각 대학교에 대한 다양성 기금의 지원 우선 순위 평가
추진 성과	· 고등교육 질 유지, 개선 보증	· 고등교육 질 권력 체계 개선 · 대학내부 여건과 지역 사회 상황을 반영한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마련 및 각종 성과 지표 개선	· 세계적 우수대학의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각 지역의 새 대학 설립으로 대학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 재정지원 우선순위 대학 특성화와 다양화, 구조조정

자료: 유현숙 외(2009). 고등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21

일본과 중국의 대학개혁

- ✓ 일본 '도야마(遠山)플랜' - "대학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발전과 재생은 없다(2001년)"
 - 국립대학의 재편, 통합을 통한 국립대학 수의 대폭 삭감
 - 10개 분야 Top 30개 국립·사립대학의 중점 육성
 - 국립대 독립법인 행정화와 민간경영기법 도입
- ✓ 중국 '211공정' '985공정' '111공정' - "선택과 집중의 인재양성과 대학육성, 국적과 인종구분 없는 야심 찬 지원"
 - 211공정 - '90년 계획, 107개 대학 선정.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일류대학과 중점학문 분야 선정"
 - 985공정 - '98년 계획, 38개 대학 선정. "세계 일류대학 건설"
 - 111공정 - '06년 계획. "세계 100위권 대학과 연구소에서 세계적 인재 1000명 중국에 초빙, 중국 100개 대학에서 연구교육"



- ① 大学ビジョンの策定による戦略的な政策展開
- ② 大学ビジョンの内容の構成イメージ
- ③ 主体的に学び・考え・行動する力を鍛える大学教育の質的転換
- ④ 大学入試の改革～学ぶ意欲と力を測る大学入試への転換～
- ⑤ 産業構造の変化や新たな学修ニーズに対応した社会人の学び直しの推進
- ⑥ グローバル化に対応した人材育成
- ⑦ 大学COC (Center of Community) 機能の強化について
- ⑧ 大学の研究力強化の促進
- ⑨ 国立大学改革【ロードマップ】
- ⑩ 国立大学改革【多様な大学間連携(制度的イメージ)】
- ⑪ 評価制度の抜本改革
- ⑫ 大学情報の公表の徹底(大学ポートレート)
- ⑬ 客観的評価指標の開発
- ⑭ 質保証支援のための新たな行政法人の創設
- ⑮ 国立大学における政策目的に基づいた基盤的経費の重点的配分の実現(イメージ図)
- ⑯ 財政基盤の確立とメリハリある資金配分の実施
【私学助成の改善・充実～私立大学の質の促進・向上を目指して～】
- ⑰ 大学の質保証の徹底推進【私立大学の質保証の徹底推進と確立(教学・経営の両面から)】

23



III.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과제

24

1.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

✓세계수준의 대학 핵심요소 Jamil Salmi(2009)



25

2.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서울대 법인화로
세계 초일류대학 도약 발판 마련

-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조직-인사-재정)
- 거점 국립대, 법인화 여건 조성 및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BK21사업, WCU사업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역량 강화

- WCU: '11년 33교, 1,552억원, BK 21 '11년 2,370억원 지원
- 분야별 SCI급 상위 10% 저널에 논문 게재 ('10, 824편->'11, 988편)
- 2013년 이후 Post BK21과 WCU사업 연계통합 준비 중

✓과학기술대학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지원

- 대학간 융·복합 R&D 추진 등 상호 협력 체제 구축
- * KAIST(융복합원천기술), GIST(광기술), DGIST(IT기반 의료로봇), UNIST(2차전지)
-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를 설치하여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

QS 발표대학 평가결과	
'07	'11
•서울대(51위)	•서울대(42위)
•KAIST(132위)	•KAIST(90위)
	•포스텍(98위)
	•연세대(129위)
	•고려대(190위)

* QS (Quacquarelli Symonds) World University Ranking



26

3.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 학부교육 선도대학(ACE)사업 - 특성 있고 경쟁력 있는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조

- '10년 신규, 300억, 11개교 → 2011년 591억, 22개교 → '12년 600억, 25개교
- 소재지 및 대학규모 고려 유형별 선정, 4년 계속 사업(2년+2년)
- 평가내용 :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 70%,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30%

✓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 '잘 가르치는 대학'에 Block Grant

- 객관적이고 공개된 지표 활용 자원배분 포물리 편당, 1년 단위 계속 사업, 비목별 집행용도 정하지 않고 총장 리더십 발휘 사업
- 4년제: '08년 64개교, 500억 → '11년 80개교, 2,420억 → '12년 97개교, 1811억
- 성과 포물리 구성지표 : 취업률지수,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지급률, 학생교육투자, 등록금부담완화지수
- + 국공립대 선진화지표(총장직선제, 기성회회계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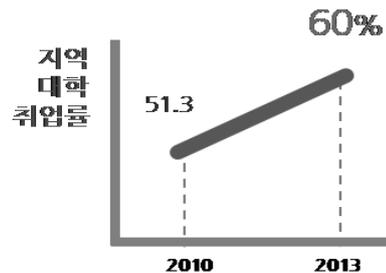
✓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강화

-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운영('08년)
- 대학평가 인증제도 도입('09년)
- '기초교양센터' 활성화를 통한 학부교양교육 강화('11년)

4. 지역대학-지역사회 · 산업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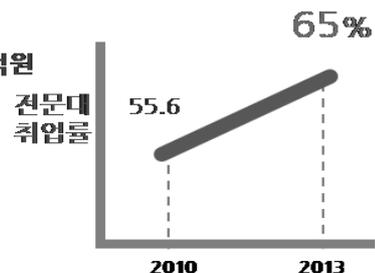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 산학협력선도대학 4년제('12, 50교, 1700억 원)
- 산학협력선도대학 전문대('12, 30교, 120억 원)
- *산학협력선도형 10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
-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 교육역량강화사업비 30%
- 산학협력 중점교수 확대, 창업교육 강화



✓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

- WCC 육성 ('11, 7교 → '12, 5억 X 14교 → '13, 21교)
- 외국인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GHC) ('12) : 9개교, 30억원
- 전문대생 글로벌 인턴십 ('12, 46억원, 600명)



✓ 선 취업 · 후 진학 제도

- LINC, WCC 대학 일부를 후 진학 선도대학 육성
- 사내대학-중소기업 재 교육형 계약학과 활성화

5. 국가장학제도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 국가장학제도 확대

- 국가장학제단 출범('09)
- 학생의 경제-생활여건을 고려, 다양한 장학금 신설
 - * ('07) 979억원 - ('11) 5,218억원 - ('12) 19,240억원
 - *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 분위 최저지원, 0.75조원)
 - *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추가지원, 1조원)

✓ 든든 학자금 제도 도입(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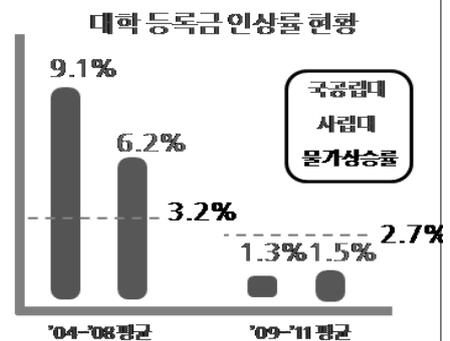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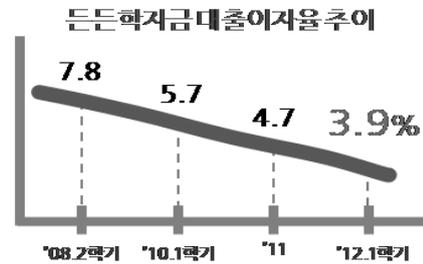
-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
 - * ('11) 1,117억 원 - ('12) 2,152억 원
- 대출이자 인하 추이 5.7%('10)→4.7%('11)→3.9%('12)

✓ 등록금 안정화

-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3년평균 물가상승을 1.5배 내)
-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11)
- 재정지원(1.75조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경감 ('12)

✓ 대학생 주거안정

- 국립대학 BTL, 사립대 민자기숙사 건립지원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29

6-1. 대학구조개혁 요약

✓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 학령인구 및 고졸자 감소에 선제적 대응
- 부실한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제고 노력 유도
- 先 부실대학 정리 후, 등록금문제 해결방안으로 대학재정확대

✓ '대학구조개혁 위원회'출범 ('11.7)

- 각 계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대학구조개혁 추진 원칙,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자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쟁점은 잔여재산 처분 등

✓ 대학구조개혁 대학 발표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교 선정 ('11. 9.5)
-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7개교 선정 ('11. 9.5)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4개교 선정 ('11. 9.23)
- 경영부실대학 4개교 선정('11.12.9)

30

6-2. 대학구조개혁 원칙과 실천방안

✓ 대학구조개혁 6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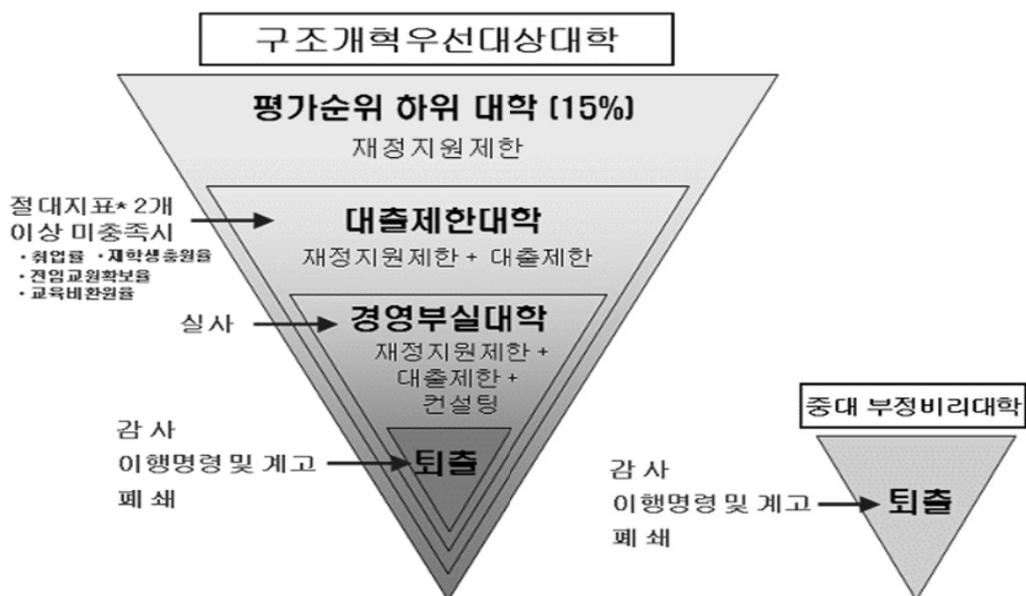
- 부실대학 퇴출 기제와 유인책 마련
- 대학교육의 질 개선
- 대학경영의 투명성 제고
- 대학경쟁력 강화
- 학생과 학부모에 신뢰성 있는 대학정보 제공
- 대학의 거버넌스 개선과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

✓ 대학구조개혁 실천 5방안

-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 정부의 사전고시와 대학공시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 정부평가를 재정지원 및 의·약학분야 등 학생정원 인가와 연계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대학 스스로 개혁하도록 한다.
-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등을 통해 대학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소통한다.

31

6-3. 대학구조개혁 개념도



32

6-4. 2012년 대학평가지표 내용

■ 사업별 배점

(단위 : %)

지 표	취업률	재학생 총원을	(전임) 교원 확보를	교육비 현원을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 지급율	상환율	등록금 부담 완화	법인 지표
대학교육역량 강화	20	20	10	10	20	10	-	10	-
정부제정지표 제한대학	20	30	7.5	7.5	10	10	-	10	5
학자금대출제한	20	30	7.5	7.5	5	5	10	10	5

33

6-5. 대학경영컨설팅 사례 예시

✓ 환경분석

- 외부환경 · 내부환경 분석

✓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 대학발전 비전전략 및 발전목표
- 평가부문 및 성과지표로 대학운영 · 기반, 교육 & 연구지표 개선방안

✓ 대학구조조정 및 실행전략 수립

- 부문별 대학구조조정, 특성화, 학과 개편 등
- 전략과제별 실행계획
- 총 · 학장 직선제 개선
- 연합대학법인화, 통 · 폐합 등 외부구조 변화 통한 규모 확대 또는 축소

34

7. 국립대 경쟁력 강화 위한 선진화 방안 추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대학

부문	세부 추진과제	
	1단계 선진화 방안	2단계 선진화 방안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 법인화(지속 추진) ▪ 학장직선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총장직선제 개선 ▪ (신규) 대학운영 성과 목표제 도입 ▪ (보완) 학장 공모제 도입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 ▪ 교원 성과금적 연봉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추진 ▪ (보완) 교원임직평가체제 선진화
재정·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 (지속)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기성회 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 	
학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정교화)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혁 지속 추진 ▪ (신규)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 (신규) 학사운영 선진화 	

**선택적
집중 재정지원**

**하위 15%대학
특별관리제**

35

8. 해결해야 할 고등교육의 과제들

- ✓ 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규모 산정 시나리오
- ✓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을 반영한 전공분야별 수급방안
- ✓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의 기능과 역할 구분
- ✓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기능과 역할 구분
- ✓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요건과 재정배분
- ✓ '고등교육 정부예산 지원 법', '사립대 구조조정 지원 법' 제정
- ✓ 사립대학 재단법인 이사장과 대학총장 간의 거버넌스 선진화
- ✓ 사립대학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정 확대와 대학재정 다변화 방안

36



IV. 대학총장의 역할과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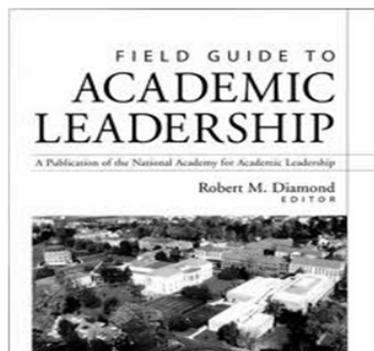
37

대학총장의 역할과 리더십

❖ 대학 총장이란?

☞ 총장의 유형 – 학자적 총장, CEO총장, 행정가총장

☞ ABCD 론 – Actor, Builder, Cheerleader, Dreamer



38

1. '혼(Spiritware) 과 비전있는 대학' 을 만드는것.



- 魂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 '존재의 이유', '개인을 뛰어 넘는 大義'
- "비전 없이 리더십 없다"
- H/W보다 S/W가 중요, H/W < Heartware, S/W < Spiritware
- '魂創通, 그 중에 제 1은 魂' ·총장은 CSO(Chief Spirit Offi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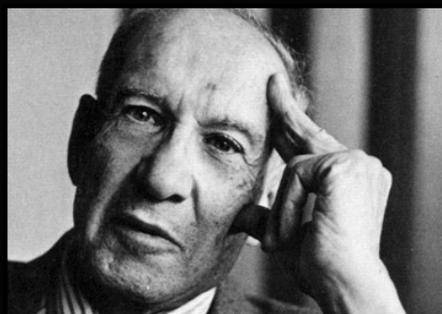
39

Kant's Plan(1798)



- ◆ 교육된 국가 관료 공급
- ◆ 새로운 지식 생산·전수
- ◆ 학문의 세분화
- ◆ World of Walls
- ◆ 1810 Humboldt U
- ◆ 1876 Johns Hopkins U

Peter. Drucker의 21세기 대학



- 지식경제 사회
- Restructuring of Knowledge
- Intellectual Capitalist
- 'Command & Control' X
- 'Collegiality & Consensus' Y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발전 로드 맵

- ☞ 단기방안 – 양적·질적 구조개혁 기획 및 추진, 재정책중 방안 마련, 전략적 투자 선택, 우수학생과 우수 교직원 확보, 교과과정 개혁, 대학간 전략적 제휴, 대학브랜드 업그레이드
- ☞ 장기방안 – 지속적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전략, 대학 캠퍼스 HW-SW 개선, 교육과 연구의 글로벌 스탠더드 충족, 재정책대 및 다변화, M&A, 제휴와 협력, 법인재단 재정 확충 및 대학전입 증대

41

2. KPI 방식의 핵심성과지표 관리에 충실.

- ‘측정하지 않으면 행해지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는다’
Stakeholder들의 질문, “진정으로 중요한 대학의 가치는?”
- 디테일이 승부를 가른다. 2% 부족이 전체를 좌우한다.

- 대학교육의 질 관리 평가 4가지 핵심요소
 - 정보공시
 - 대학 자체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평가
 - 평가결과와 정부재정 연계
- 교육의 질 결정 요인
 - Input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및 수월성, 재정 및 경영능력, 법인능력)
 - Output (학업성취, 취업률, 기업만족도, 졸업생 보수, 교수논문, 특허)
 - Process (학습 및 교수방법, 커리큘럼, 학사관리, 학과 통·폐합, 글로벌화)

3. 창조적 파괴를 통해 민첩하게 관성의 족쇄를 깨는 것.

Destroy Your Business - "DY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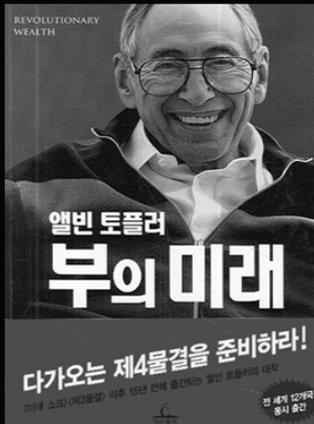
CEO = CDO

*Chief
Destruction
Officer*



-Jack Welch, CEO of General Electric

- 주요기관의 변화속도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
-기업 100마일, NGO 90마일, 정부 25마일, 대학 10마일



대학은 진화론적(Evolution)
변화 인식

VS

대학밖은 혁명론적(Revolution)
변화 기대

- 한 시간 100점 < 10분 60점 x 6 = 360점

❖ 대학변화를 위한 총장의 Attit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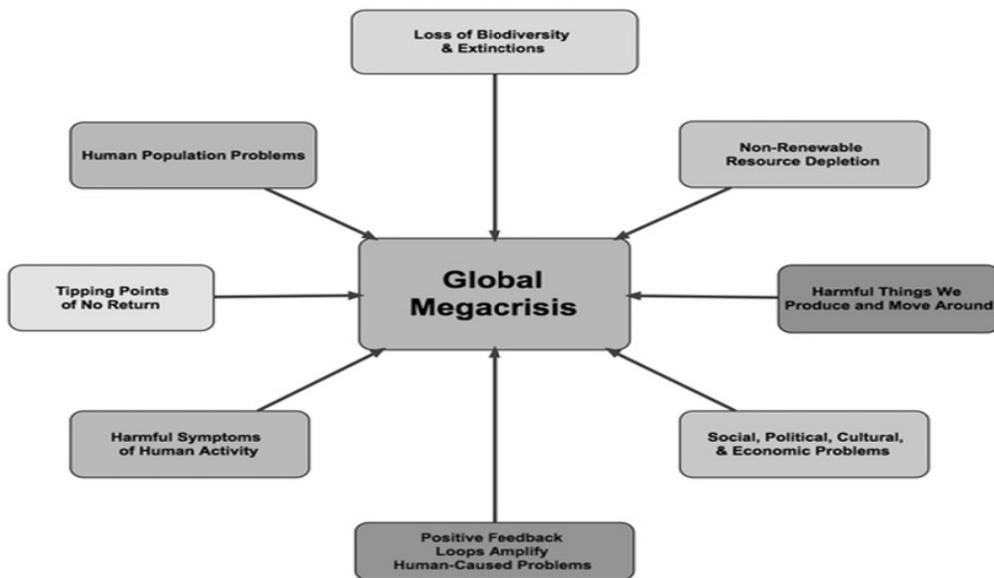
- 자신을 아는 것
- 대학 기반을 아는 것
- 조치를 취하는 것
- 자신의 직책을 사랑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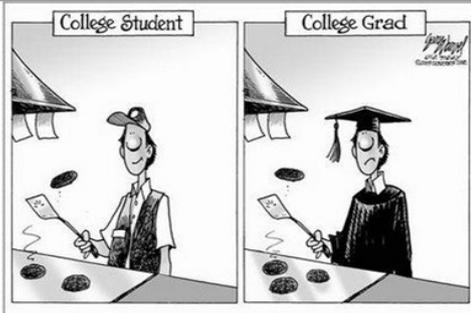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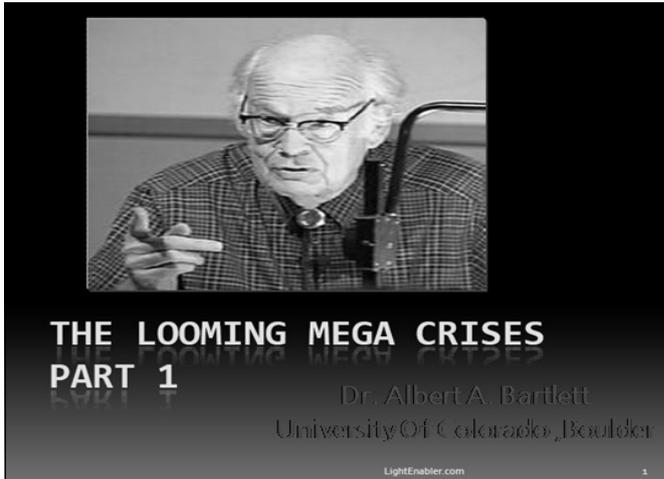
“君君 臣臣 父父子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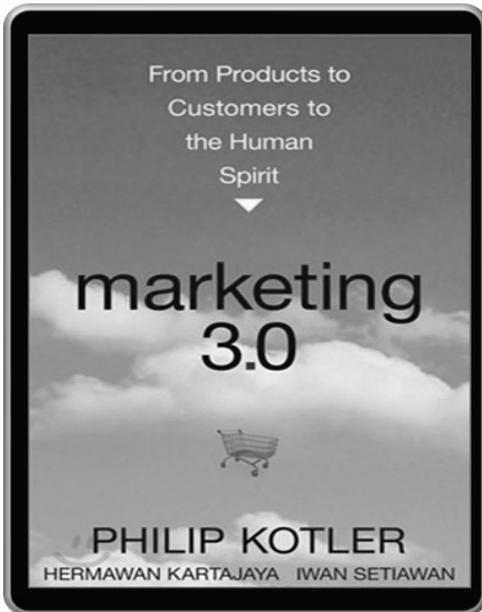
4. 글로벌 Megacrisis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

“세계의 문제가 곧 당신의 문제다.” - 미국 다트머스대





5. 수요자 중심, 마켓 3.0 시장에 대응.



- ✓ 대학은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
- ✓ 중국대륙의 천재들이 홍콩대로 가는 이유

❖ 대학 마켓 3.0

- Town & Gown 공동체(HOC)
- 특성화·차별화 브랜드
- 교육가치 주도(기량+인성+영성)
- 대학홍보: 흥(興), 신(新), 소(笑)를 활용하라!

6. 대학 3業시대, 저비용·고효율의 대학가치로 개혁.

저비용 대책

- 재정위기 극복 위한 실효적 '예산·결산 위원회' 시스템 : '긴축은 개혁' '窮即通'
- 강의 단위·경영단위·교수단위 원가분석
- 724(7일 24시간)+12개월 년 중 캠퍼스 가동 체제
- Tenure 제도 개선
- 외국 영리대학의 학점장사 대응책 마련

고 효율 대책

- '대학 3업' <취업·학업·창업>에 맞는 커리큘럼
- 수요자 눈높이강좌, 포트폴리오 교육의 질 관리
-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 학습
- 창의력 배양, 융합형·통섭형 Pedagogy



7. 블루오션 전략과 레드오션 전략을 수립 추진.

- 롱 테일(long tail) 분야에 주목하라 - 80% 사소한 다수 교육과정이 효자상품. 시장은 MAS (Mobile, Application, Social Network) 의존



- 평생교육과정, e 러닝 과정, 교육컨텐츠,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블루 오션 전략
- 잃어버린 '흑자의 섬'을 찾는 레드 오션 전략
- 국내외 대학의 베스트 프랙티스 분야(BPA) 탐색과 접목 - Fast Follower

8. <노아의 방주> 방식으로 대학개혁 후원군 확대.

- “<노아의 방주이야기>처럼 소통하고 화합하라.”
 - “문제점”은 더 적게, “해법”은 더 많게
 - “적”은 더 적게, “우군”은 더 많게
 - “내부비난”은 더 적게, “반성”은 더 많게
- “좋은 법인이 좋은 총장, 좋은 대학을 만든다”
-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보상 또 보상하라”
- “기부금 모금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가 모금 액 보다 중요하다.”
-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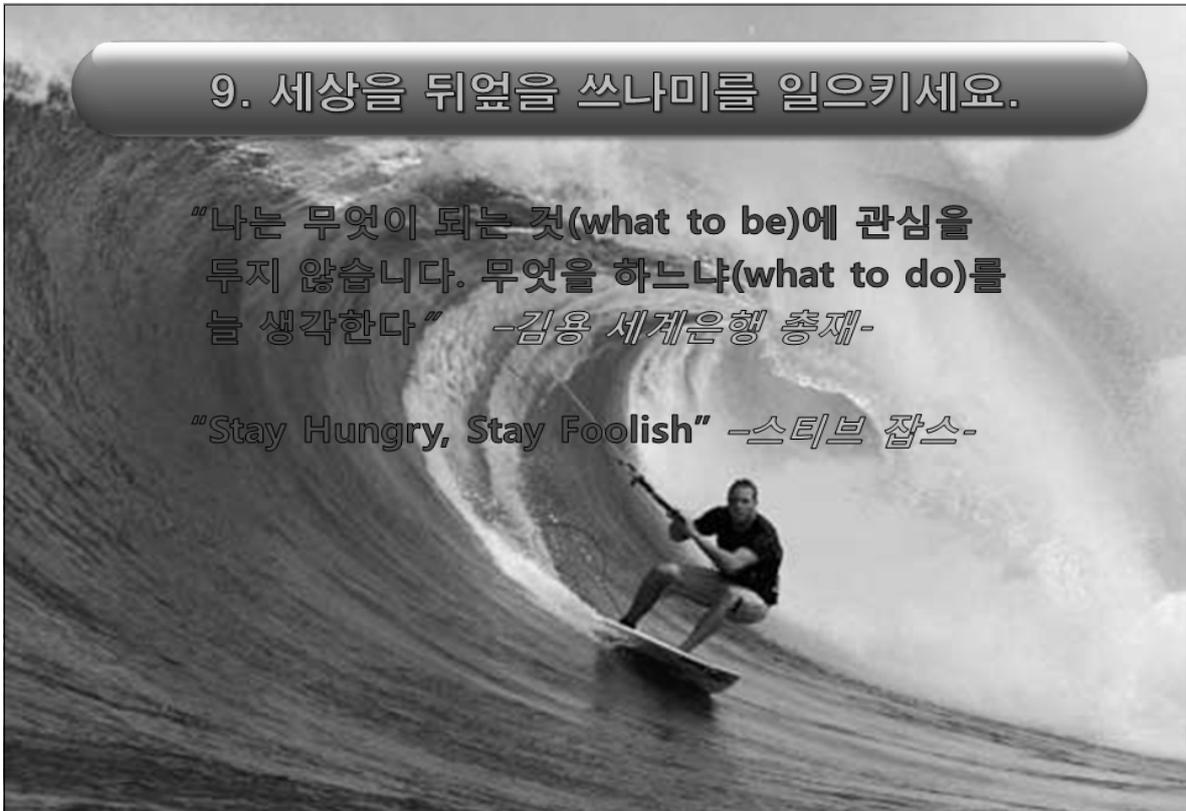


51

9. 세상을 뒤엎을 쓰나미를 일으키세요.

“나는 무엇이 되는 것(what to be)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what to do)를
늘 생각한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memo



memo



memo



memo



특별위원회 분과회의

특별위원회 분과회의 안내

분과명	회의장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고등교육정책과 자율화에 대한 논의 (발표교수: 남서울대 이석열)	2F	시드니2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대학재정관련 법률 입법동향에 대한 대응방향 (발표교수: 숙명여대 송기창)	2F	시드니1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법조직역 자격 통합 및 법학전문대학원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 (발표교수: 중앙대 함영주)	신관 3F	남풍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에 대한 보완적 논의 -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 실현 (발표교수: 전북대 반상진)	2F	시드니3
사학법대책위원회 ■ 사립대학 관련 쟁점 (발표교수: 협성대 김성기)	신관 3F	남풍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현황 보고 및 쟁점 논의 (발표교수: 한국대학평가원 서민원)	1F	시실리
국제화대책위원회 ■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와 고등교육의 세계화 (발표교수: 명지대 손희권)	B1	아틀란티스보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시드니 2]

자문교수 이 석 열(남서울대학교)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28인		
구 분	대 학 명	성 명
위 원 장	이화여대	김 선 옥
부위원장	국민대	유 지 수
위 원	경기대	최 호 준
	경북대	함 인 석
	경성대	송 수 건
	금강대	정 병 조
	금오공과대	우 형 식
	동아대	조 규 향
	백석대	장 택 현
	상명대	강 태 범
	상지대	유 재 천
	서강대	이 종 욱
	서경대	최 영 철
	서울시립대	이 건
	순천대	송 영 무
	순천향대	손 풍 삼
	신경대	송 문 석
	아주대	안 재 환
	연세대	정 갑 영
	우송대	존 엔디컷
	인천대	안 경 수
	장로회신학대	장 영 일
	전남대	김 윤 수
	중원대	홍 기 형
	차의과학대	이 훈 규
	초당대	김 병 식
한국성서대	강 우 정	
한밭대	이 원 목	
자문교수	남서울대	이 석 열

2012년 하계총장세미나 대학자율화위원회

고등교육 정책과 자율화에 대한 논의

2012.06.29(금)

이석열
남서울대학교
leesy@nsu.ac.k

1

Contents

1 대학 자율화의 의미

2 주요 고등교육정책과 자율화의 내용

3 자율화 정책의 특징

4 향후 대학 자율화에 대한 시사점

2

고등교육 정책 개요

1. 대학입시자유화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2. 국립대학 법인화
3.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ACE 사업
4. 대학평가와 정보공시제
5. 대학등록금 정책
6. 대학교원인사정책
7.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선진화 방안
8. 사립대학 구조개혁

5

1. 대학입시자유화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 대입 3단계 자유화 방안을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대입 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고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확대
- 2011년도 121개 대학이 운영하면서 대입선발 방식의 한 부분으로 폭넓게 채택

개선되어야 할 과제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문제
-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의 문제
- 입학사정관제도에 대비하는 사설 학원
-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나친 확대의 부작용

6

2. 국립대학 법인화

-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자율화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
- 2010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
- 2011년 9월에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

개선되어야 할 과제

- 법인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았는가?
- 서울대학교의 법인화와 동일하게 타 국립대도 추진할 수 있는가?
- 국립대학도 국가가 아니라 국립대학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가 정당한가?

7

3.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ACE 사업

- 재정 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지표에 근거한 포물러 방식을 도입해서 대학 별로 차등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성과 장수를 위한 경쟁풍토를 조성
- 대학 층장의 자율적,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

개선되어야 할 과제

-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경쟁을 유도
- 대입전형, 대학등록금 인하, 거너년스 전환 등 정책적 지표를 사업지표로 추가
- 지표중심의 추진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를 혼란

8

4. 대학 평가와 정보공시제

- 대학정보공시제(2008)와 대학자체평가(2009) 및 평가결과 공개의 의무화
-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 기관평가인증제가 추진

개선되어야 할 과제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 대학에서의 교육·연구 여건 및 성과 관련 정보의 활용 한계
- 정보공시 범위, 횟수 및 시기 조정

9

5. 대학 등록금 정책

- 대학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마찰 속에서 '반값 등록금'은 정치적 이슈로 빠르게 확산
-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개선되어야 할 과제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과 적정선을 규제(대학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수준과 책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 감사원의 대학 감사를 촉발

10

6. 대학교원 인사정책

- 전임강사 직급을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의 분류체계 속에 포함시키면서 '강사' 라는 직급을 신설
- 강사의 임용은 대학(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고 임용기간은 1년 이상

해결해야 할 과제

- 전임강사를 폐지하면서 조교수의 자격과 임용시간
- 강사의 임용자격과 절차, 신분 보장
- 대학의 행정력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11

7.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선진화 방안

-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1단계를 발표 (2010. 9.28)
-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2011. 7. 27)
- 국립대학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과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구조개혁방안(2011. 9)
- 2012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과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2012. 1.27)

12

-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
- 총장 직선제 개선
-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
- ‘특별관리제’ 를 운영(하위 15% 대학 컨설팅)
국립대학의 통폐합(일반대와 산업대, 일반대와 교육대)

해결해야 할 과제

- 국립대학의 자율화는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침해를 받음
- 선진화와 구조조정을 앞세워 국립대학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의 의사소통
- 상대평가를 통한 무한 경쟁
- 국립대학 본질에 역행
- 정책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

13

8. 사립대학 구조개혁

-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2011.7.27)
- 대학간 통폐합 유도
- 정책재정지원 제한 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 경영부실 대학

개선해야 할 과제

-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자체의 문제
- 대학 구조개혁의 지표가 정책추진을 위한 ‘역지표’ ,
‘임기응변 지표’ 로 추진
- 상대평가를 통한 무한 경쟁
- 사립대학의 본질에 역행
- 정책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

14

- 대학 자율화를 표방하면서도 대학정원과 재정지원 사업평가,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통제는 ‘자율’의 의미를 무색하게 함.
- 대학 자율화의 산물로서 볼 수 있는 대학 특성화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그 방향성이 불분명해짐.
-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의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정책의 부재를 보임.
- 모든 정책이 평가지표와 수치 중심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책 본래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게 함.

17

✓ **향후 대학 자율화에 대한 시사점**

- 1 대학 자율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 대학 스스로의 고민과 책무성에 대한 기대로 대학이 발전
- 2 대학 간의 협의체를 보다 활성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가 활발할 때 외부의 통제를 견제
- 3 대학 간 경쟁에 의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고
- 대학의 역할이나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훼손
- 4 대학입학정책에서 정치적 전략은 이제 그만
- 입시제도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시각
- 5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싸구려노력이 필요
-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에 비해 고교 졸업생수의 급격한 감소
- 6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고려할 때 대학원 교육 검토
- 대학원 교육과 정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아님

18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 정립

-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 자율화를 보장하도록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하위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학과 정부(교육과학기술부)와의 관계 정립
- 대학재정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완충기구로써 대학 자율기구에서 다루게 하는 것도 검토
- 대학 내에서도 단과대학단위의 자율적 대학경영이 강조
- 대학의 자체 질 관리 체계 강화

“대학 경쟁력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절대 불가결한 것이다.

자율은 대학의 생존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재정대책위원회

[시드니 1]

자문교수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대학재정대책위원회 35인		
구 분	대 학 명	성 명
위 원 장	서울여대	이 광 자
부위원장	성균관대	김 준 영
위 원	가야대	이 상 희
	가천대	이 길 여
	가톨릭대	박 영 식
	감리교신학대	김 흥 기
	강남대	윤 신 일
	건양대	김 희 수
	경기대	최 호 준
	경남과학기술대	김 조 원
	경인교대	정 동 권
	경일대	정 현 태
	경주대	이 순 자
	공주교대	한 승 희
	그리스도대	임 성 택
	대구외국어대	서 용 범
	대구한의대	이 준 구
	대불대	이 승 훈
	동명대	설 동 근
	동신대	김 필 식
	부산대	김 기 섭
	숙명여대	한 영 실
	송실대	김 대 근
	신라대	정 흥 섭
	영산선학대	김 희 정
	을지대	박 준 영
	중부대	임 동 오
	한국산업기술대	최 준 영
	한국외국어대	박 철
	한라대	이 정 무
	한림대	노 건 일
	한북대	강 신 경
	한서대	함 기 선
	한신대	채 수 일
한양대	임 덕 호	
자문교수	숙명여대	송 기 창

대학재정관련 법률 입법동향에 대한 대응방향

송기창(숙명여대)

I. 민주통합당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매년 국가 예산으로 정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불안정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 운영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학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 대학 진학 취학연령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대학들 가운데는 부실대학과 비리사학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이러한 부실대학, 비리사학의 지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어 이들 대학에 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배적임.

따라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GDP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서 정하고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나.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3년 6.0%, 2014년 6.5%, 2015년 7.0%, 2016년 7.5%, 2017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 다. 고등교육재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등의 변동에 맞추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보통교부금은 국립대학의 경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매년 산정하여 교부하고,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국·공립고등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등록금표준액의 범위 내에서 그 등록금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을 교부함.
- 마. 사업교부금의 일부는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교부하도록 함.
-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장과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 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할 의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법인전입금의 규모 등을 포함한 “보통교부금 교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사.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사립고등교육기관 학교 법인의 법정 재단전입금의 전입이 부실한 경우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아. 교부금을 교부받은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교부금에 관한 회계 보고의무와 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함.
- 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따른 2013년~2017년까지의 5년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총액은 74조 8,8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정〉

(단위: 십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내국세	179,438	194,303	209,653	222,574	239,489	1,045,457
교부세율	6.0%	6.5%	7.0%	7.5%	8.4%	
교부액	10,766	12,630	14,676	16,693	20,117	74,882

II. 민주통합당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를 장담할 수 없음.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자 연체와 높은 금리, 낮은 이용률 등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획기적인 확충과 함께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 나. 등록금표준액 및 등록금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구성함.

Ⅲ. 민주통합당 제출법안의 문제점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법률안」의 문제점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취지인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대학경상비의 총액 지원을 통한 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반값등록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제1조에서 교부금법의 목적을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고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대학경쟁력 강화’라고 밝히고 있으나, 법안의 내용은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대’, ‘국립대학의 불균형 발전’, ‘고등교육의 경쟁력 약화’를 담고 있음.
- 반값등록금 실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교부금의 기본개념(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조차 반영되지 못한 ‘국립대학 반값등록금 지원법’ 성격을 가짐.
-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상비 지원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안정화하고, 추가적으로 보통교부금교부협약에 의한 보통교부금(기성회비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보임) 지원을 보장하여 국립대학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임.
-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국립대학 보통교부금을 1차로, 교부협약에 의한 보통교부금을 2차로 배정하고, 나머지를 사업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어서 고등교육재정 사업비의 규모가 매년 달라지는 문제, 즉 고등교육재정사업비의 불안정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함.
- 국립대학 경상비가 늘어나고(국립대학 경상비 지원기준이나 지원규모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경상비 규모가 불확실함), 기성회비 보전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교부금이 줄어들어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재원은 매년 줄어들 가능성이 큼.
- 보통교부금교부협약을 통해 사립대학을 준국립대학(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음.
-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도 생략한 채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 사업교부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보통교부금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고보조금처럼 사업비가 매년 달라지는 문제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교부

대상은 나열되어 있으나, 사업교부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 어느 정도 금액을 교부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교부금 교부를 빌미로 정부가 과도하게 대학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교부금제도의 목적 중의 하나는 특별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총액 교부함으로써 교부받은 기관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일일이 예산을 보고받고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변경조치를 요구하고 사용내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칭과는 달리 국고보조금법처럼 설계되어 있음.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 개별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가 지역여건, 교육여건, 가구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전공계열 및 학부별로 등록금표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교부금을 지원받는 대학은 등록금표준액의 1.2배 범위내에서 등록금을 정하되,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등록금표준액은 기본적으로 국·공·사립간 구분없이 전공계열 및 학부별로 등록금을 정하기 때문에 등록금표준액을 따를 경우, 국·공립에 비해 사립의 등록금 결손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별도의 등록금 보전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IV.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대응방향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분리하는 전략,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분리하는 전략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만 발전한다고 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대학이나 수도권대학 중 어느 한쪽만의 발전이 고등교육의 발전은 아님.
 - 국가재원의 한계를 이유로 어느 한쪽에 집중 지원하는 것도 적절한 정책이 아님. 국가의 책임이 국립대학 진흥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국립대학 설립자로서의 책임과 함께 대학교육 진흥 책임도 가지고 있음이 부각되어야 함.
-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대학재원을 확충할 책임을 가짐과 동시에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

- 을 보장할 책임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교부협약을 체결하여 사립대학의 국립대학 전환이나 준국립대학 전환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 사립대학의 국가적 기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학교법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수익용기본재산제도와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법령개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정치권의 논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대응이 필요함.
 - 명목등록금의 인하를 통한 반값등록금이 바람직한지,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대학들의 합의가 필요함.
 - 대학에 갈만한 형편의 대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대학교육에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저소득층은 오히려 기회의 증가분에 대한 제 몫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일률적 반값등록금보다는 학생에 대한 보조 확대가 필요함.
 -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등록금에 관한 것으로, 이월적립금을 투입하여 등록금 인상요인을 대체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에 불과함.
 - 일률적인 반값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대학교육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80%라는 대학 진학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게 되면 더 많은 학생이 대학에 가게 되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반값등록금보다는 소득계층에 따른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가 타당함.
 - 대학의 질적 저하 없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재정 지원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며, 학생지원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대학에 대한 기관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임. 학생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액까지 학생지원액에 포함시킬 경우 대학재정은 축소되어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함께 국가장학금제도의 재설계,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의 개선, 대학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및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남풍]

자문교수 함 영 주(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10인		
구 분	대 학 명	성 명
위 원 장	영산대	부 구 욱
부위원장	제주대	허 향 진
위 원	경상대	권 순 기
	단국대	장 호 성
	서남대	김 응 식
	울산대	이 철
	전남대	김 윤 수
	조선대	이 상 열
	한중대	이 승 일
자문교수	홍익대	장 영 태
	중앙대	함 영 주

LOGO



법조직역 자격 통합 및 법학전문대학원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함영주



법조 인접 직역 자격 통합 논의

- 법조인접직역 자격통합 논의의 배경
 - 법조(法曹)의 개념
 - 법조(法曹)는 판사, 검사, 변호사 만을 한정하는 의미임. 현직 여부에 따라 재조(在曹), 재야(在野)로 또다시 구분함.
 - '법률가'개념의 필요성
 - 위를 모두 포섭하는 용어로 '법률관련직' 또는 '법률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통섭화 경향에도 어울림
 - 직역통합 논의의 배경과 문제점
 -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한 신규 변호사 수가 과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 이 때문에 직역통합은 다음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
 - 신규변호사수 억제(공급독점) 중심의 논의가 문제

2012.06.29



법조인접직역의 범위

- 법조 인접 직역 또는 법률가 직역의 범위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노무사
 - 세무사
 - 관세사

 - 공인중개사
 - 손해사정인

 - 민간기관(NGO 포함) 법률업무 종사자
 - 행정 및 입법기관 법률업무 종사자
 - 대학 등 법률교육기관 종사자
 - 해외 기관/기구 법률업무 종사자

2012.06.29



직역 통합의 조건 1

- 법조인접직역 자격 통합의 필요 조건
 - 인접직역의 필요 또는 요구가 선행되는 경우
 -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실무교육 요원의 지원 요청
 - 실무교원의 개업금지 요건이 장애 요인

 - 변호사의 수가 억제해도 무의미할 정도로 폭증
 - 변호사의 수가 아주 많아지면 변호사 수를 통제하여 현상을 유지하려는 생각(공급독점)을 포기할 것임

 - 인접 분야 전문가들의 시장 상황 악화
 - 각자가 지킬 시장이 없으면 자격증 의존도 자체가 완화될 것임

2012.06.29



직역 통합의 조건 2

- 인접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능력 구비
 - 해당분야의 자격도 인정된다는 인식보다 업무능력 자체에서 경쟁력을 갖출 경우
- 관련 단체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
 - 송무분야 이외의 분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예를 들면 법전원의 교수요원)에 대해서도 규제가 아닌 지원 우선
 - 단체 대표자의 업적과시용 대책 지양: 장기적으로 직역 자체(미래 세대)에 해가 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지양
- 형식(자격증)에 의존하지 않는 실력과 실질 중시의 의식
 - 자격증 제도의 원래 취지
 - 경쟁이 곧 높은 실력을 의미하는 것 아님을 인식
 - 시험 만능주의 극복
 - 시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악화가 양화를 구축) 지양

2012.06.29



직역 통합 논의의 진정성 필요

- 직역통합논의의 관점 : 국가 인적자원 관리차원
 - 법조분야로의 인력집중은 다른 분야 인력의 유출임을 인식
 - 국가 인재의 적절한 배분의 관점
- 사회 분쟁해결비용의 절감에 대한 논의 집중
 - 기존 법조분야의 사회 분쟁해결비용의 과다 인정
 - 모든 사건이 1심-2심-3심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나라 외에 거의 예가 없음
-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에 대한 논의
 - 협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집단은 경쟁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집단임을 인식
 - 정보의 독점은 독: 문제 정보에 대한 검증 기회의 봉쇄
 -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경쟁과 협력
 - Win-Win의 경험 공유

2012.06.29



법학전문대학원 추가설치 (원칙)

- 변호사 수 억제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추가설치 및 정원 증원 가능
 - 공급을 조절하여 수요를 억제한다는 생각(공급독점)은 사회시스템의 면에서 유해함
 - 변호사 단체는 현 구성원 이익 관점을 넘어서야 함; 장래(미래) 세대 변호사의 이익과 발전가능성을 고려
 - 인재양성의 다양화 다변화 차원에서 추가설치나 증원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국가인력양성의 관점에서
 - 국가의 교육비 지원: 산업육성의 차원
 - 사법연수원에 지원하던 비용(인적, 물적 비용)은 법학전문대학원교육에 지원
 - 변호사 자격제는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구성원을 위한 것임을 인식 필요

2012.06.29



사법시험 존치 (예외)

- 사법시험 존치 입장
 - 기존 사법시험의 내용에 변화를 준다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얻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시험, 과목과락제 도입, 1년 2회 시험, 자격시험화 등의 제도
 - 변호사에게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내용과 사법시험내용의 문제임
 -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교육가능
- 사법시험 폐지 입장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음
 - 사법시험이 돈 적게 들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도록 하는 시험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근래에는 설득력이 떨어짐; 이미 고비용화 (대학과 개인에 비용/부담 전가, 시험준비 장기화)
 - 기존 사법시험방식을 유지할 별도의 근거제시 필요

2012.06.29



예비시험제 (예외)

- 예비시험제의 장점
 - 예비시험은 사법시험제가 폐지되는 경우 변호사시험을 볼 기회를 부여하는 시험으로 일종의 변호사 검정고시
 -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의미가 있음
 - 법과대학의 존립근거가 될 수 있음

- 예비시험제의 단점
 - 변호사시험의 방식이나 운영에 의해 예비시험합격생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울 수 있음
 - 소수 예비시험생을 위한 고액학원 난립 우려(변호사 시험합격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동일)
 - 시험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과제
 - 일본의 경우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이 고사하는 경우 발생 가능

2012.06.29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시드니 3]

자문교수 반 상 진(전북대학교)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27인		
구 분	대 학 명	성 명
위 원 장	한국교통대	장 병 집
부위원장	공주대	서 만 철
위 원	강릉원주대	전 방 옥
	강원대	권 영 중
	경상대	권 순 기
	군산대	채 정 룡
	대구교대	남 승 인
	목포대	고 석 규
	목포해양대	안 영 섭
	부경대	박 맹 언
	부산교대	김 상 용
	부산대	김 기 섭
	서울과기대	남 궁 근
	서울교대	신 향 균
	안동대	정 형 진
	인하대	박 춘 배
	진주교대	김 선 유
	창원대	이 찬 규
	청주교대	김 배 철
	춘천교대	김 선 배
	충남대	정 상 철
	충북대	김 승 택
한국교원대	김 주 성	
한국방송통신대	조 남 철	
한국체대	김 종 욱	
한국해양대	박 한 일	
한밭대	이 원 목	
자문교수	전북대	반 상 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에 대한 보완적 논의

-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 실현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차례

- ▶ I. 배경 및 필요성
- ▶ II.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
- ▶ III.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
- ▶ IV.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관련 주요 내용과 보완적 논의
 - ▶ 1. 교부금의 재원규모에 관한 논의
 - ▶ 2. 교부금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 3. 교부금의 교부신청 교부 거부 조항에 의거 대학 구조조정 유도
 - ▶ 4. 교부율의 보정 조항에 의해 대학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치 마련
 - ▶ 5. 교부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교부 방식의 합리성 도모

1.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 **고등교육재정은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어 정권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왔음.**
- **고등교육재원의 불안정성은 대학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힘들게 하고, 그에 따라 대학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시키며, 나아가 재정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없음.**
- **18대 국회에서 김우남의원, 임해규의원, 권영길의원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바가 있었지만 19대 국회 들어 자동 폐기되었음.**
-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5월 30일에 민주통합당은 민생 공약 8대 의제와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1차 당론 발의했고, 그 중에 첫 번째 법안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임.**
- 이 법안 제정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제정의 필요성

- **대학이 정치권력, 행정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적 독립과 자율 운영”**
-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
- **고등교육투자의 최소수준 확보**
- **국가재정 여건 변화나 정치적 논리에 이끌리는 역기능적 요인 제거**
- **대학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 장기적 효과 제고**
- **자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유인할 수 있는 자율조정장치 마련**
- **공적재원 확충을 통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감소와 이를 통한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공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



II.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

반대론	대응 논리
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교육기관간 재정력 격차 존재. 국민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그 재정력의 격차를 시정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 고등교육기관은 당연히 교부금의 교부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학진학률이 80% 내외로 한국은 이미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 대학교육은 전문가 양성 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의 성격이 강화되었음.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칸막이 재정으로 비효율성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9위권인 경제규모인 한국이 대학투자 수준은 22위권으로 대학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른 국가에서는 시도하지 않지만 너무도 열악한 대학투자를 하는 국가인 만큼, 일정 적정 규모의 대학재정을 확보하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다른 국가에서 시도하지 않는 선도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 정권에 따라 추진하는 각종 국가시책사업의 비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재정 건전성 악화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함. - 따라서 대학투자 확대 문제는 투자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국가의 교육관에 대한 문제임.

반대론	대응 논리
대학개혁(대학구조조정)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등은 보통교부금과 달리 현행의 사업비 배분방식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교부되는 예산이므로 대학의 특성화도 살리고 구조조정 및 통·폐합도 저해하지 않음. - 사업교부금은 현재의 사업비 배분방식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학 특성화,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임. - 특히 대학경영이 부실하거나 사학법인의 법정 재단전입금의 전입이 부실한 경우 등에는 교부금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안 제7조제2항).

반대론	대응 논리
<p>사립대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p>-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한 지원이 대상이고, 사립대학은 국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임</p> <p>-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도 납세자이며,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도 똑같은 납세자임.</p>
<p>개별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결국 국대학교육은 평준화됨</p>	<p>-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만을 반영하고, 연구비, 사업비, 특별한 시설비 등은 사업교부금으로 구분. 산정할 경우 평준화 우려는 기우</p>

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국회검토보고서('11.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비상대책실무위원회 내부자료, 발췌. 재정리 보안

Ⅲ.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

- ▶ ● **한국은 국가 경제력에 비해 고등교육투자가 매우 인색한 국가**
 - '2011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표 1>),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9,081로 OECD 평균 \$13,71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평균교육비의 약 70% 수준
 -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중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2008년 기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대부분 민간부문(1.9%)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실정
 - 그리고 한국은 2008년 GDP 규모가 1조 2,400억달러로 OECD 30개 국가 중 9위 차지하였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22위 차지

<표 1>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	1.5	2.4	3.1	1.3	1.5	1.1	
공공재원	1.0	0.6 (31위)	1.0	0.7	0.5	0.9	
민간재원	0.5	1.9 (2위)	2.1	0.6	1.0	0.2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	공공재원	69.1	20.7 (28위)	31.6	35.8	32.5	84.7
	민간재원	30.9	79.3 (2위)	68.4	64.2	67.5	15.3
학생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US\$(ppp환산액))	13,717	9,801 (22위)	27,010	15,463	14,201	13,823	
고등교육 평균재학 기간동안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누적 교육비(US\$(ppp환산액))	57,775	31,149 (19위)	m	67,153	59,500	61,896	

주 : 1) PPP(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s) : 구매력 평가기준 환율.
 2)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비율에는 전체 교육비에 대한 행정 경비비율 미 포함.
 출처: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통계는 2008년 기준임.

- <표 2>에서 보듯이, 지난 4년간 기준으로 4년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총세입 규모는 평균 26조 9,726억원
 - 그 중에서 국고지원 규모는 평균 4조 9,193억원(18.2%)
 - 재단전입금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이 9조 7,058억원(36.0%)
 - 나머지 등록금 수입이 12조 3,475억원(45.8%)으로 대부분을 차지
- 2011년 예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4년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총세입 규모는 28조 414억원
 - 그 중에서 국고지원 규모는 5조 501억원(18%)
 - 대학등록금 수입이 12조 8,606억원(45.9%)으로 대부분을 차지
- 따라서, 고등교육투자는 공적 지원보다는 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

<표 2> 부담주체별 고등교육투자의 규모

구분	총세입			국고지원 (대학예산)	대학등록금 수입(학생)			기타 (사회, 법인)
	국공립	사립	총계		국공립	사립	총계	
2008	62,059	183,805	245,864 (100.0)	43,934 (17.9)	17,799	100,894	118,693 (48.3)	83,237 (33.9)
2009	71,996	196,331	268,327 (100.0)	51,947 (19.4)	18,787	102,571	121,358 (45.2)	95,022 (35.4)
2010	74,233	210,061	284,294 (100.0)	50,390 (17.7)	18,103	107,137	125,240 (44.1)	108,664 (38.2)
2011	73,200	207,214	280,414 (100.0)	50,501 (18.0)	19,041	109,565	128,606 (45.9)	101,307 (36.1)
평균	70,373	199,353	269,726 (100.0)	49,193 (18.2)	18,433	105,042	123,475 (45.8)	97,058 (36.0)

주: 1) 모든 수치는 결산금액 기준이고, 2011년은 예산임.
 2) 국·공립대 총세입은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총계임.
 3) 사립대 총세입은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학교기업회계의 총계임.
 4)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은 수업료 및 입학금, 기성회비를 포함한 금액임.
 5) 기타는 재산수입, 재단전입금(사립), 기부금, 수수료 수입 등을 포함한 금액임.
 6) 4년제 국공립 및 사립 일반대학, 교육대, 산업대, 방통대 대상임.
 출처 : 대학알리미;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Ⅳ.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관련 주요 내용과 보완적 논의

- 여기서는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촉구를 위한 보완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19대 국회에서는 아직 여당과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음.

1. 교부금의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

- 국내총생산(GDP)의 1.0% 달성을 위해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교부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교부금의 재원과 종류(제3조 제1항, 제2항)

가. 재원 및 규모(제1항) : 내국세 총액의 84/1000

-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1.0% 달성 기준
-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13년 6%, '14년 6.5%, '15년 7%, '16년 7.5%, '17년 8.4%로 단계적 인상(부칙 제2조)

나. 종류(제2항)

- 교부금은 보통교부금·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여 교부
-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 교부금의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

● <표 3>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수준을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총 대학생 수로 곱해 대학 총 공교육비 수준을 분석한 결과(반상진, 2011).

-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한국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는 \$10,607이고, 총 대학생 수를 고려하면 23조 2,939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하지만 2008년 실제 대학 총 공교육비는 18조 1,340억원으로서 5조 1,599억원 정도 추가 투자가 필요하였음.

- 2009년에는 OECD 국가기준으로 볼 때 5조 3,34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고, 2010년에는 6조 2,79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음.

- 이러한 추가 투입 규모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의 15.23%(GDP의 약 0.57%)의 추가 증액이 요구되는 규모임.

1. 교부금의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

<표 3> 연도별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추정 결과를 통한 총 공교육비(추정) 규모

연도	GDP (PPP, US\$)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PPP, US\$)	대학생 수 (명)	적정 대학 총 공교육비 추정 (단위: 억원, 환 율: 1,130원)	실제 대학 총 공교육비 (단위: 억원)	차이 (A-B)
2008	27,716	10,607	1,943,437	232,939	181,340	51,599
2009	27,938	10,700	1,984,043	239,891	186,548	53,343
2010	29,791	11,486	2,028,541	263,327	200,536	62,791

주: 1) 대학생 수는 재적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대학 공교육비 = 국공립대 교육비+국공립대 기성회계 예산액+사립대 교비회계 예산액(통계청 산출방식 출처; 반상진(2011). "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추정 연구".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1. 교부금의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

- ▶ ●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고등교육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6조 2,800억원의 추가 고등교육 재원(교육예산의 15.23%, GDP의 0.57%)이 필요한 실정임.
 - 2010년 기준 총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5조 390억원(실제 배분액) + 6조 2,800억원(추가 소요액) = 11조 3,190억원으로 추정
 - 이러한 규모는 2010년 기준 내국세(총 128조원)의 8.84%임.
-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9%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교부금 규모가 11.52조원으로서 실제 국고지원 대학예산의 5조 390억원의 2.3배 증액된 수치임.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법(안)에서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교부 방식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1. 보통교부금의 교부방식(제5조, 제7조)

가. 보통교부금의 교부(제5조)

- (제1항) 국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통교부금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매년 산정하여 교부
- (제2항)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국·공립고등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 교부
- (제4항)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나. 보통교부금 교부협약 (제7조)

-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

1. 재학생 1인당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2. 중앙등록금채정위원회가 정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
3. 보통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할 의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부금의 교부방법, 교부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보통교부금 교부 신청 거부 조항

1. 고등교육기관의 경영이 부실한 경우
2.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고등교육기관 운영의 경비로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최근 3년간 평균 재학생수가 매년마다 학교규칙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전체의 50%에 해당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4.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내부 구성원 간 또는 법인 임원 상호간의 분쟁·소송 진행 등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금의 교부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2. 사업교부금의 교부방식(제6조)

가. 사업교부금의 교부(제6조)

- 사업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에서 보통교부금을 제외한 금액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사업 내용의 법제화)

1.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사업
2. 고등교육기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3.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5. 고등교육기관 간 통·폐합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
6. 고등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을 위한 사업
7. 고등교육기관의 해외교류사업을 위한 사업
8. 기초학문 지원 육성사업
9. 지역균형선발 및 계층균형선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보통교부금 교부 대상이 모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보통교부금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지만, 사립대학에 운영비성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보통교부금 교부협약을 통해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총액 지원 방식)을 포함시켜야 함.

-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법안과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8.4%로 할 경우, 그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4조9520억원 (2011년 내국세 수입, 178조원)
- 따라서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교부 비율 : 60% : 40%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 * 이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8조9,712억원, 사업교부금 5조9,808억원
- ▶ * 그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국립대학 3조6,600억원(총세입의 50%),
- ▶ 사립대학 5조3,112억원(총세입의 25.6%) 정도를 교부할 수 있음.

- ▶ ※ 2011년 기준 4년제 국·공립대학의 총 재정규모는 평균 7조3,200억원 중에서
- ▶ - 국고지원인 일반회계; 2조 5,177억원 (34.4%)
- ▶ - 산학협력단회계; 2조 5,597억원 (35.0%)
- ▶ - 기성회회계; 2조 2,426억원 (30.6%)

[교부금 확보에 따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I" ; 교부금으로 국고지원이 14조9,520억원(2.96배 증액)이 되고, 총세입과 기타 세입이 동일하다면 대학등록금은 1/4 수준으로 인하됨.

2. "시나리오 II" ; 교부금으로 국고지원이 14조9,520억원(2.96배 증액)이 되고, 기타 세입은 동일하며 대학등록금 수준이 1/2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대학의 총세입은 31조5,131억원으로 12.4% 증가됨.

<표 4> 고등교육투자의 규모 추정 시나리오

구분	총세입			국고지원 (대학 예산)	대학등록금 수입(학생)			기타 (사회.법인)
	국공립	사립	총계		국공립	사립	총계	
2011 (실제 규모)	73,200	207,214	280,414 (100.0)	50,501 (18.0)	19,041	109,565	128,606 (45.9)	101,307 (36.1)
시나리오 I (교부금을 등록금인하 에만 사용할 경우)	73,200	207,214	280,414 (100.0)	280,414 (100.0)	4,379	25,200	29,587 (10.6)	101,307 (36.1)
시나리오 II (교부금을 통해 등록금 50%만 인하할 경우)	82,262	232,867	315,131 (100.0)	315,131 (100.0)	9,521	54,783	64,304 (20.4)	101,307 (32.1)

주; 1)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재정 중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은 공립대학은 19.4%, 사립대학은 36.4% 수준임.
2) 그리고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은 공립대학인 경우 51%, 사립대학인 경우 16.2%임.

● **사업교부금은 국립대학과 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현행의 사업비 배분방식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교부되어 대학의 특성화도 살리고 구조조정 및 통·폐합도 유도할 수 있음.

3. 교부금의 교부신청 교부 거부 조항에 의거 대학 구조조정 유도

- 보통교부금 교부협약(제7조) 제2항에 의거 부실 및 비리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통교부금 교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

4. 교부율의 보정 조항에 의해 대학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치 마련

- 법안 제4조(교부율조정)에 의거 고등교육재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등의 변동에 맞추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교부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교부 방식의 합리성 도모

- 법안 제8조(교부금심의위원회)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으로써 교부금의 합리적 교부를 기대할 수 있음.

사학법대책위원회

[남풍]

자문교수 김 성 기(협성대학교)

사학법대책위원회 19인		
구 분	소속대학	성 명
위원장	동양대	최 성 해
부위원장	광운대	김 기 영
위원	건동대	방 열
	경동대	전 성 용
	경운대	김 향 자
	대전신학대	황 순 환
	명지대	유 병 진
	부산장신대	최 무 열
	서경대	최 영 철
	서울기독대	임 종 운
	성결대	주 삼 식
	세명대	김 유 성
	아세아연합신학대	김 영 옥
	예원예술대	윤 호 군
	총신대	정 일 웅
	침례신학대	도 한 호
	칼빈대	김 재 연
	평택대	조 기 흥
한영신학대	한 영 훈	
자문교수	협성대	김 성 기

사립대학 관련 쟁점

2012. 6. 29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목차

1. 종교사학에 대한 통제

2. 사학의 자주성, 특수성 및 공공성 증진
방안

3. 대학평의원회의 법적 지위

1. 종교사학에 대한 통제

신입생 선발시 종교적 자격제한 문제

- 찬성측: 비종교인도 학문적 접근 가능하도록 문호 개방
- 반대측: 해당 종교인이 아닐 경우 입학후 종교과목 거부와 민원제기 등 혼란 야기

2. 사립대학 감사 범위와 기준 명시

국립대학은 정부조직의 일부로서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감사체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은 법적으로 민간조직임

사립대학에 대하여 정기감사라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움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 사업비집행, 보조금 집행 감사에 국한하여야 함

3. 대학평의원회의 법적 지위

1안: 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2안: 평의원회의와 교무위원회 통합

3안: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의 정관 위임

평의원회 개선방안1: 자문기구화

- 제도를 유지하되 자문기구화함으로써 교무위원회 등 학내기구와의 의사결정상의 충돌을 해소함
- 대신에 교직원 인사와 예결산 등 자문사항을 광범위하고 구체화함

평의원회 개선방안2: 교무위원회 통합

- 총장과 부총장, 학장, 처장 중에서 10인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교무위원회를 흡수통합함.
- 사립학교법상의 대학헌장 제개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고 예결산 사항도 자문사항으로 둬

평의원회 개선방안3: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의 정관 위임

-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제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은 정관에 의하여 심의나 자문 기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대학평가대책위원회

[시실리]

자문교수 서민원(한국대학평가원)

대학평가대책위원회 65인		
구분	소속대학	성명
위원장	호원대	강희성
부위원장	성신여대	심화진
위원	계명대	신일희
	고신대	김성수
	관동대	박희종
	광신대	정규남
	광주대	김혁종
	광주가톨릭대	노성기
	광주교대	박남기
	광주여대	주자문
	꽃동네대	이원우
	나사렛대	신민규
	남부대	조성수
	남서울대학교	공정자
	대구가톨릭대	소병욱
	대구대	홍덕률
	대구예술대	이희영
	대전가톨릭대	민병섭
	대진대	이근영
	덕성여대	지은희
	동국대	김희옥
	동덕여대	김영래
	동서대	장제국
	동의대	정량부
	목원대	김원배
	목포가톨릭대	김민수
	배재대	김영호
	부산가톨릭대	윤경철
	삼육대	김상래
	상명대	강태범
	서울과학기술대	남궁근
	서울교대	신항균
	서울신학대	유석성

	서울장신대	문 성 모
	서원대	손 석 민
	성결대	주 삼 식
	세종대	박 우 희
	수원가톨릭대	이 용 화
	안동대	정 형 진
	영남대	이 효 수
	영남신학대	권 용 근
	영동대	송 재 성
	예수대	서 광 수
	우석대	강 철 규
	울산과기대	조 무 제
	원광대	정 세 현
	위덕대	배 도 순
	인천가톨릭대	김 흥 주
	전북대	서 거 석
	전주교대	유 광 찬
	전주대	고 건
	진주교대	김 선 유
	청운대	이 상 렬
	청주교대	김 배 철
	포항공과대	김 용 민
	한경대	김 성 진
	한국해양대	박 한 일
	한동대	김 영 길
	한려대	서 복 영
	한성대	정 주 택
	한세대	김 성 혜
	한일장신대	정 장 복
	호남대	서 강 석
	호남신학대	차 종 순
	호서대	강 일 구
자문교수	한국대학평가원	서 민 원

2011-12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현황
보고 및 쟁점 논의**

2012. 6. 29. 전국대학총장세미나(부산 파라다이스)
서민원(한국대학평가원 원장)



 한국대학평가원
Korean University Accreditation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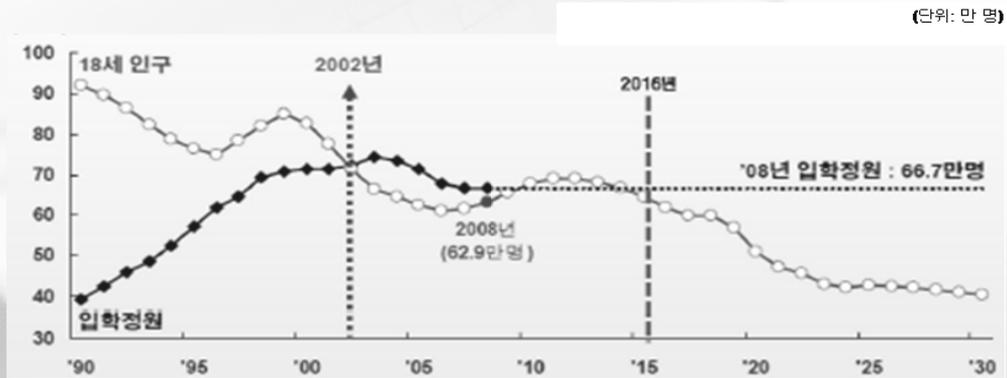
발표내용

- 1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요
- 2 대학별 인증 신청현황
- 3 영역별·부문별 평가결과 종합
- 4 준거별 평가결과 종합
- 5 대학별 정량지표 분석 결과
- 6 논의 및 제언

2

 한국대학평가원
Korean University Accreditation Institute

1.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요: 고등교육 현황과 위기



(대학 입학정원과 18세 인구 추이)

출처: 김철희 외 (201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운영

3

1.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요: 인증의 개념과 의의

- ◆ 인증의 개념
 - 인정과 인증
 - 평가범람과 대학사회의 혼동

- ◆ 대학평가인증의 필요성
 - 국제적 통용성
 - 교육의 질 보장과 질 개선

4

1.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요: 평가와 인증의 관계

◆ 평가

- 가치부여 활동
- 측정과 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 인증

- 사회적 공신력 부여
- 의사결정(Certificate/Diploma/Licensure)

5

1. 대학기관평가인증: 논리와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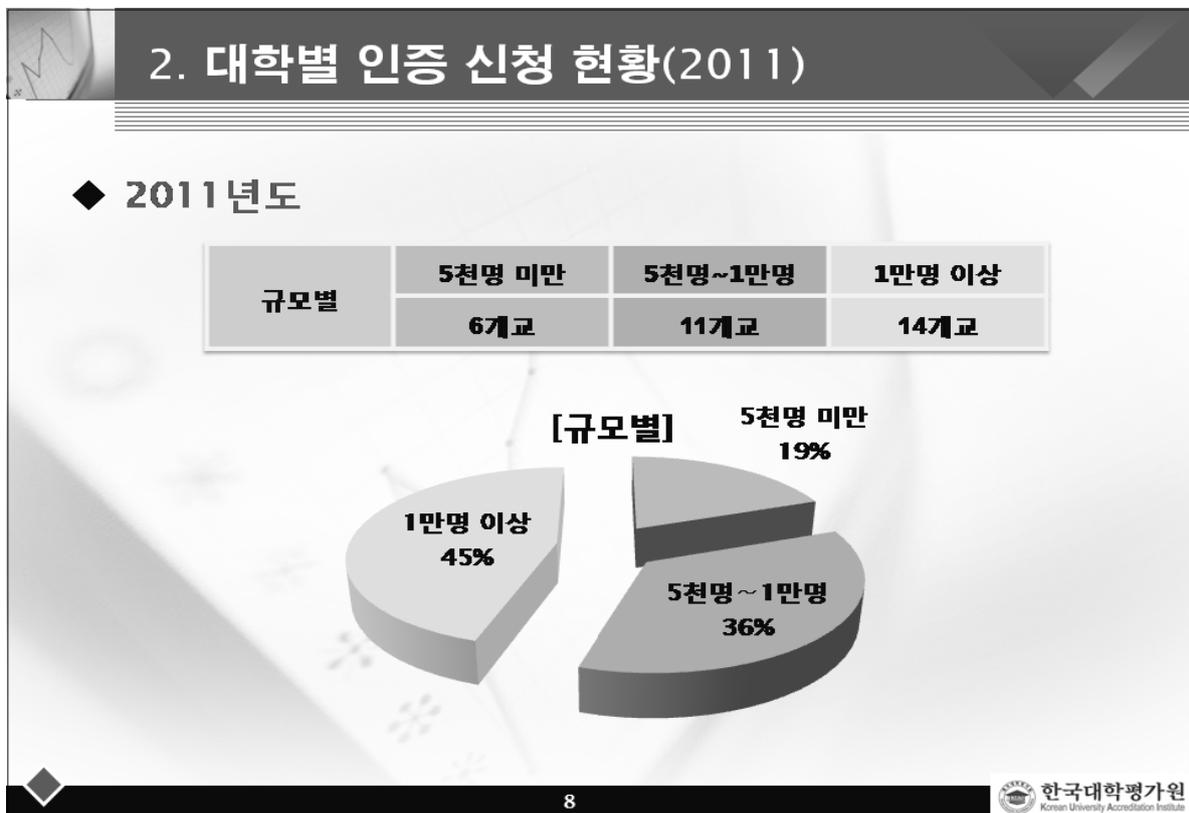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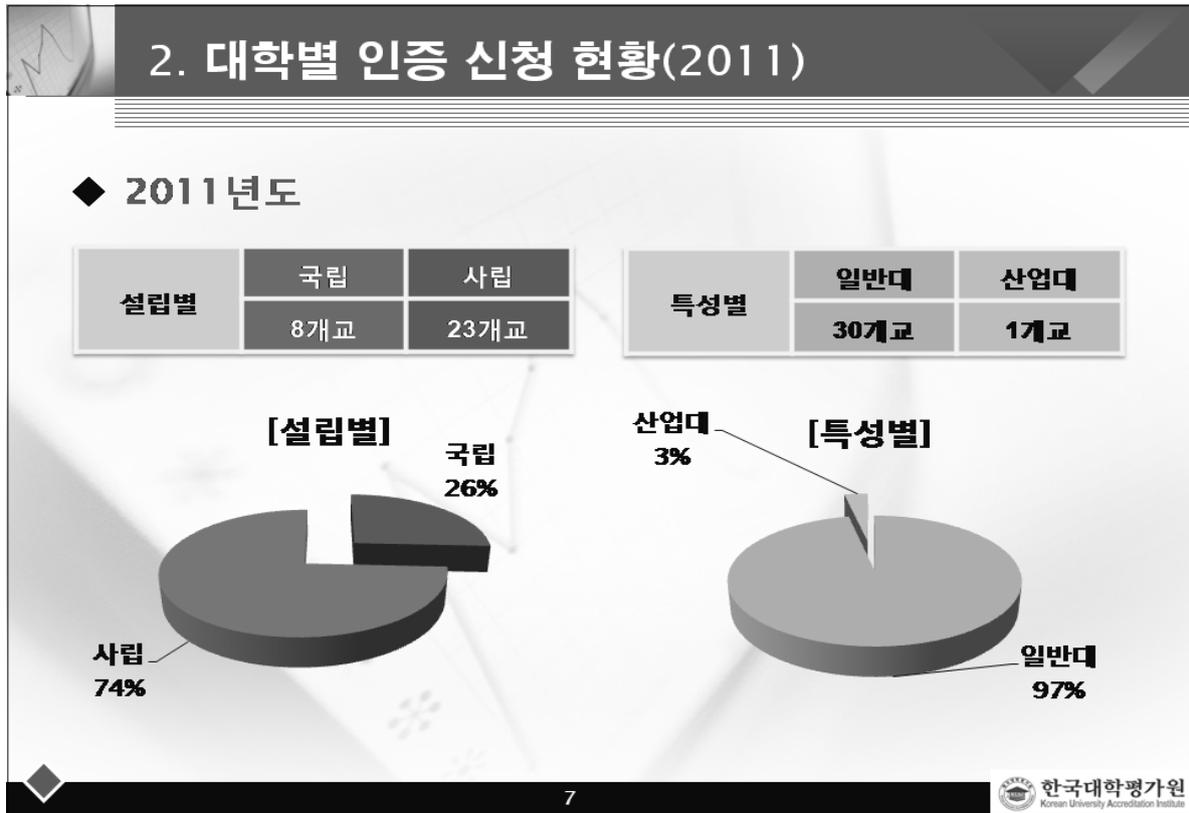
◆ 인증평가의 논리: STAR

- Student Learning Outcome
- True Uniqueness
- Assurance & Improvement of Q
- Requirement of Minimum Criteria

◆ 인증평가의 실제

- 대학의 자율적 질 개선 체제
- 평가원과 협의체의 관계
- 협의체와 학회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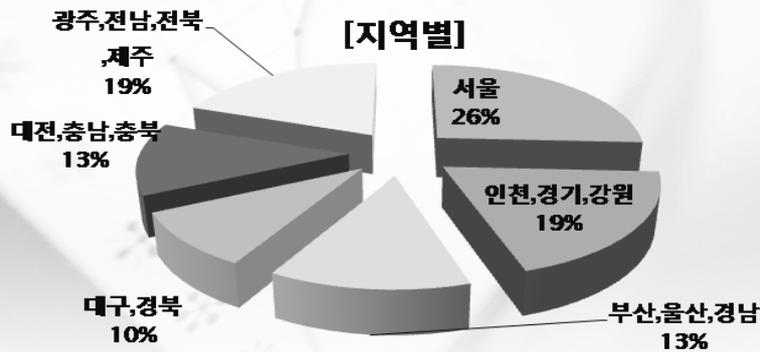
6



2. 대학별 인증 신청 현황(2011)

◆ 2011년도

지역별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주,제주
	8개교	6개교	4개교	3개교	4개교	6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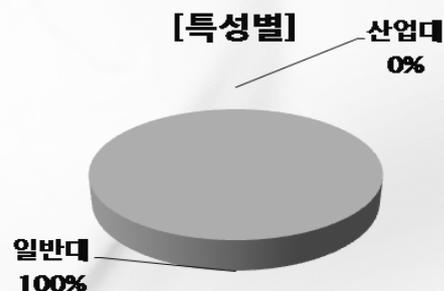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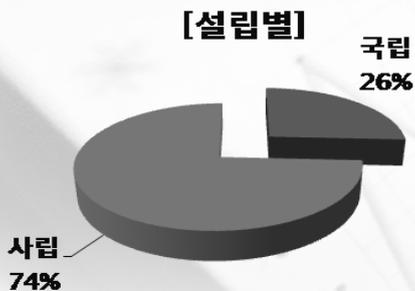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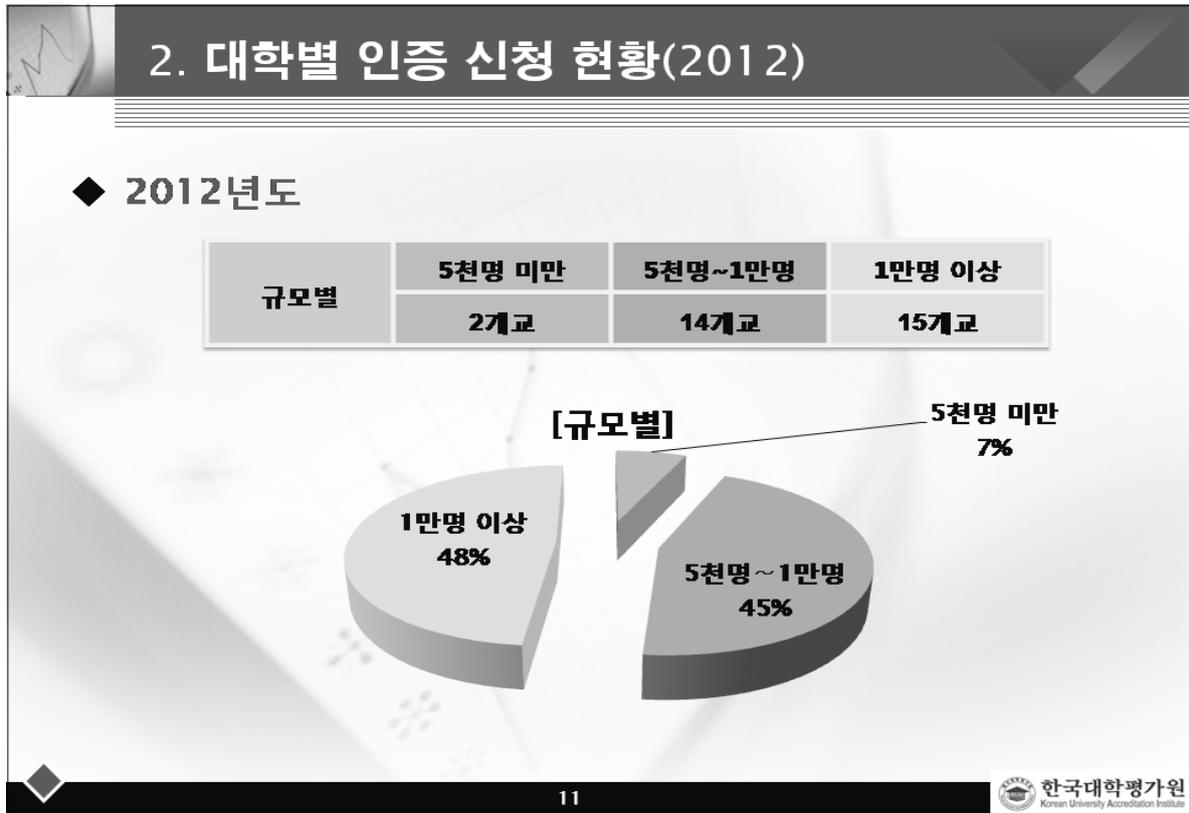
2. 대학별 인증 신청 현황(2012)

◆ 2012년도

설립별	국립	사립
	8개교	23개교

특성별	일반대	산업대
	31개교	0개교





3. 영역별·부문별 평가결과 종합

영역명		P	W	F	부문명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31	-	-	1.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31	-	-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30	1	-
					1.3 자체평가	31	-	-
2	교육	30	1	-	2.1 교육과정	30	1	-
					2.2 교수학습	30	1	-
					2.3 학사관리	29	2	-
					2.4 교육성과	29	2	-
3	대학 구성원	31	-	-	3.1 교수	30	1	-
					3.2 직원	30	1	-
					3.3 학생	31	-	-
4	교육시설	30	1	-	4.1 교육기본시설	31	-	-
					4.2 교육지원시설	30	1	-
					4.3 도서관	29	1	1
5	대학재정 및 경영	30	1	-	5.1 재정확보	29	2	-
					5.2 재정 원성 및 집행	30	1	-
					5.3 감사	28	3	-
6	사회봉사	31	-	-	6.1 사회봉사	31	-	-

13

4. 준거별 평가결과 종합(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준거명		P	W	F
1.1.1	교육목표	31	-	-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31	-	-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30	1	-
1.3.1	자체평가수행	31	-	-

14

4. 준거별 평가결과 종합(2. 교육)

준거명		P	W	F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29	2	-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0	1	-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1	-	-
2.1.4	실험·실습·실기교육	29	2	-
2.1.5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28	3	-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28	2	1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29	2	-
2.2.1	수업 규모	22	9	-
2.2.2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26	5	-
2.2.3	교수·학습개선노력	29	2	-
2.3.1	학사관리 규정	29	2	-
2.3.2	성적관리	23	8	-
2.3.3	수업평가	27	4	-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 경고자에 대한 조치	29	2	-
2.4.1	졸업생의 취업률	30	1	-
2.4.2	교육만족도	30	1	-

4. 준거별 평가결과 종합(3. 대학 구성원)

준거명		P	W	F
3.1.1	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준거>	31	-	-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30	1	-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31	-	-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29	2	-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25	6	-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28	3	-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29	2	-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24	6	1
3.2.1	직원 규모	30	1	-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30	1	-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29	2	-
3.3.1	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30	1	-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31	-	-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31	-	-
3.3.4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30	1	-

4. 준거별 평가결과 종합(4. 교육시설)

준거명		P	W	F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31	-	-
4.1.2	강의실 확보율	31	-	-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31	-	-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29	2	-
4.2.1	기숙사 확보 현황	29	1	1
4.2.2	학생복지시설	28	3	-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25	6	-
4.3.1	도서관 운영	29	1	1

4. 준거별 평가결과 종합(5. 대학재정 및 경영)

준거명		P	W	F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27	4	-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30	1	-
5.1.3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및 수익률(사립대)	15	6	2
5.1.4-1	세입 중 기부금 비율(국공립대)	8	-	-
5.1.4-2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사립대)	22	1	-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28	3	-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30	1	-
5.2.3	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31	-	-
5.3.1	감사제도	28	3	-
5.3.2	감사결과활용	29	2	-

4. 준거별 평가결과 종합(6. 사회봉사)

준거명		P	W	F
6.1.1	사회봉사정책	31	-	-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31	-	-

5. 대학별 정량지표 분석 결과

◆ 정량지표(필수평가준거)

(단위: 개교)

준거		기준값 100% 충족	기준값 90% 충족	기준값 80% 충족	대학 수	결측
3.1.1	전임교원 확보율	118	156	186	201	0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185	192	194	201	0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181	190	191	201	0
4.1.1	교사 확보율	147	167	188	201	0
5.2.2	교육비 환원율	138	172	183	189	12
5.2.3	장학금 비율	182	186	188	188	13

5. 대학별 정량지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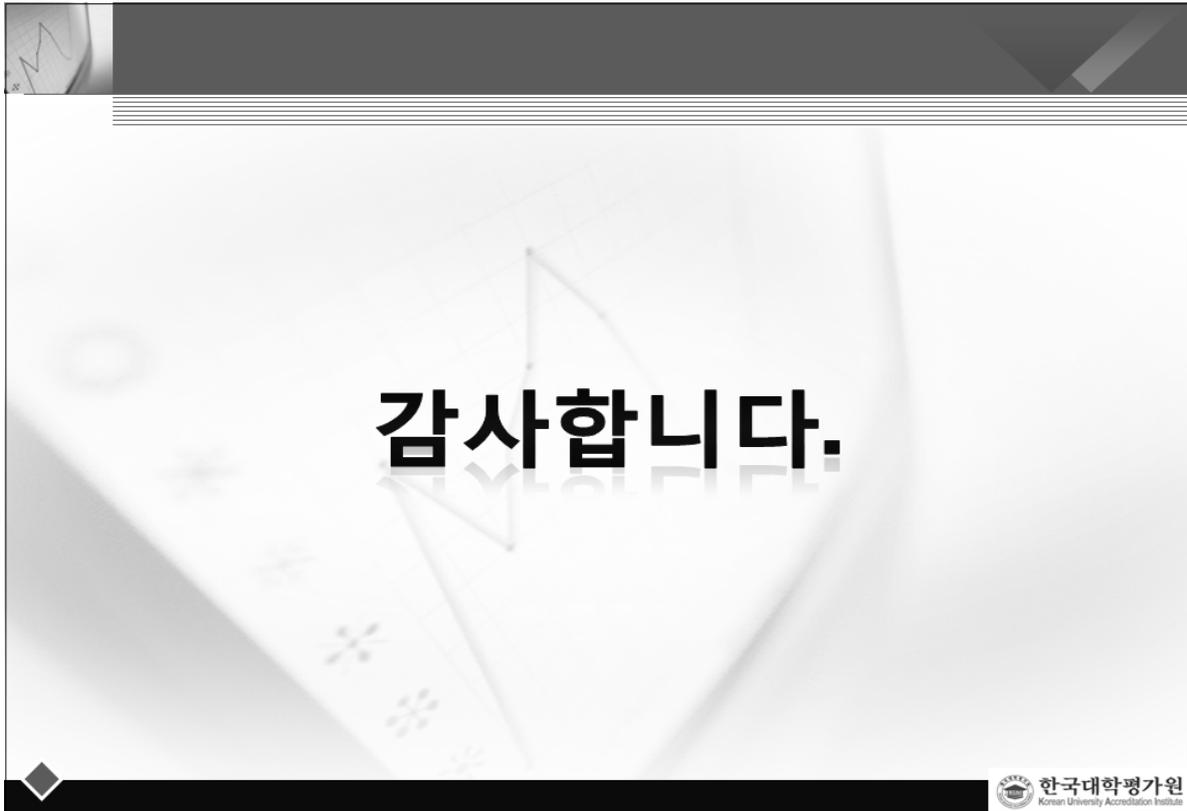
◆ 정량지표(필수평가준거 외)

(단위: 개교)

준거	기준값 충족	대학 수	결측	전체 해당 대학수
2.1.5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참여학생 비율	114	134	67	201
2.1.6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학생 비율	146	156	45	201
2.2.1 수업규모	146	195	6	201
2.4.1 취업률	170	199	2	201
3.1.3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136	195	6	201
3.1.6 시간강사 강의료	110	195	6	201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139	201	0	201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82	201	0	201
3.2.1 직원1인당 학생수	156	200	1	201
4.2.1 기숙사 수용률	152	192	9	201
4.3.1 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구입비(천원)	137	201	0	201
4.3.1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133	189	12	201
5.1.2 등록금 의존율	118	190	11	190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사립)	88	157	44	170
5.1.4-1 기부금 비율(국공립)	27	30	171	31
5.1.4-2 법인전입금 비율(사립)	120	160	41	170

6. 논의 및 제언

- 1) 기관인증평가 - 정성평가
 - 대학의 특성 발견에 초점
 - 최소기본여건 충족여부 판단
 - 국내외적 요구, 국제적 통용성 증대
- 2) 기관인증평가 결과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2012년도, 2013년도 상반기 적극 참여
- 3) 기관인증평가를 통한 대학발전 모색
 - 구조조정, 대학경쟁력 확보, 특성화



국제화대책위원회

[아틀란티스보드]

자문교수 손 희 권(명지대학교)

국제화대책위원회 17인		
구 분	소속대학	성 명
위원장	한남대	김 형 태
부위원장	안양대	김 승 태
위원	경남대	박 재 규
	극동대	류 기 일
	루터대	김 해 철
	부산외국어대	정 해 린
	선교청대	이 강 무
	선문대	황 선 조
	성공회대	양 권 석
	용인대	김 정 행
	인제대	이 원 로
	중앙대	안 국 신
	청주대	김 윤 배
	추계예술대	임 상 혁
	한국기술교육대	전 윤 기
	한국항공대	여 준 구
협성대	장 동 일	
자문교수	명지대	손 희 권

국제화 분과 특별위원회 발표자료

1

손 희권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2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2. 고등교육의 세계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①

3

1. 정책 방향의 변화:

- 1) 기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2012년 10만 명 목표 - 현재 9만 명)
- 2) 변화:
 - 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글로벌 인재(2020년 20만 명 목표)
 -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다각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②

4

2. 전략:

- 1) 국가:
 - ① 국가별 및 지역별 전략 수립
 -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 및 역량 인증제 실시
 - ③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 a. 인턴십 기회의 확대
 - b. 한류와의 연계
 - ④ 유학과 관광의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③

5

- ⑤ 대외 홍보 강화: 외교
 - a.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동문회의 구축
 - b.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특히 글로벌 인재를 중심으로
 - c.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해외 설명회의 개최
- ⑥ GKS의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④

6

- 2) 대학:
 - ① 국제화 지원 전문 행정인력의 양성 및 채용
 - ② 계약서 작성
 - ③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 제공
 - ④ 영어 강의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외국어 강의 제공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⑤

7

- 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과의 교류 활성화
- ⑥ 모교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⑦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고등교육의 세계화

8

1. 고등교육 학위 인정을 위한 국가 정보센터(NIC)의 설립 및 운영
2.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유치 확대
3. 국내 대학 및 대학생의 해외 진출 교류 확대
4.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

고등교육 학위 인정을 위한
국가정보센터(NIC)의 설립 및 운영①

9

1. 국가를 대신하여 학위인정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정보센터
2. 국내·외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인된 정보의 총괄 및 제공
3. 외국 학위 등에 대한 인정심사, 인정관련 지침 및 자문 제공

고등교육 학위 인정을 위한
국가정보센터(NIC)의 설립 및 운영②

10

4. 대학의 UNESCO 학위 보충설명자료(Diploma Supplement)의 활용 촉진
5. 학위소지자 신상, 수여기관명, 학위기능 및 수준, 수강과목 및 학점체계 등 정보 제공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유치 확대 ①

11

1. 정책의 변화:

1) 현행:

- ① WCU
- ② BK21

2) 2013년 이후:

- ① 1유형: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연구집단 집중 지원
- ② 2유형: 융·복합 분야 학문 연구 및 핵심 인재 양성 지원
- ③ 3유형: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중심 지원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유치 확대 ②

12

2.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1) 연구: 여건 조성

2) 교육:

- ① 교육방법에 대한 지원
- ② 한국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3) 행정:

- ① 영문 계약서
- ② 직업 안정성
- ③ 보험
- ④ 인센티브의 공유

국내 대학 및 대학생의 해외 진출교류 확대

13

1. 대학생 인턴의 확대와 해외 취업과의 연계: 특히 중동 지역
2. Campus Asia 참여 국가의 확대를 통한 아태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의 양성
3. 국외 분교 설립 규제 완화 및 업무 매뉴얼 개발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①

14

1.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컨설턴트)의 양성 및 재교육:
 - 1) 특히 국제적 수요가 있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예: 교육, 보건, 지역개발 등)
 - 2) 글로벌한류 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②

15

2. 국제개발협력기관과 대학의 파트너십 구축

- 1) 국내 : KOICA, EDCF, 정부부처, 국제개발협력 NGO, 민간 기업(사회적 책임) 등
- 2) 국외: UN, UNSECO, OECD, 세계은행, 다국적 은행 등

16

감사드립니다

고등교육 정책제안 발표 및 토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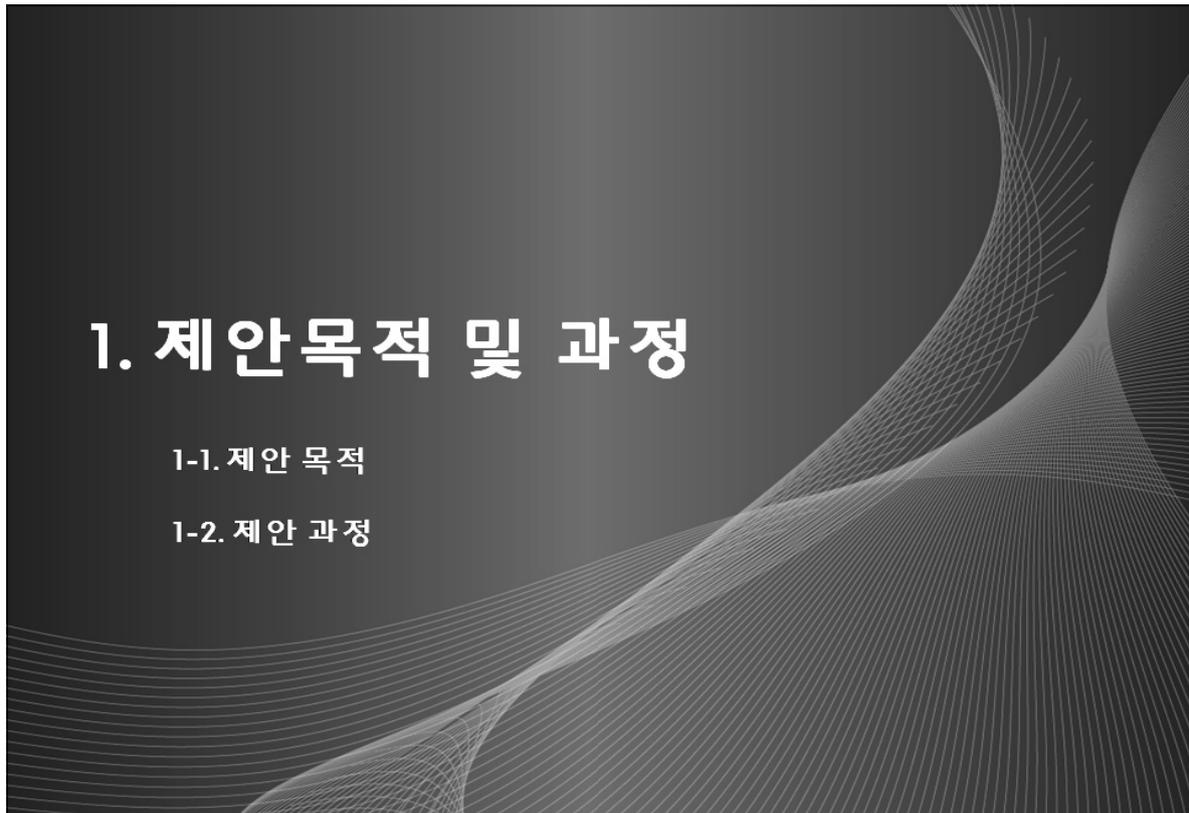
김 수 경 원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의 20대 정책 과제 제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Contents

- 1 제안목적 및 과정
- 2 고등교육 20대 정책과제



1-1. 제안목적

- ✓ 대교협 차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비전 제시
- ✓ 회원 대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등교육정책 마련
- ✓ 정당별 대학정책 공약에 대한 대응 방안 도출
- ✓ 2012년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통한 회원 대학총장 의견 수렴
및 핵심 정책 방향 정립

1-2. 제안 과정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허브로서의 고등교육 20대 과제

주요 정당별
대학 및 청년
관련 정책
분석

대교협
특별위원회
고등교육 관련
현안 수렴

대교협
고등교육
연구위원회
논의

정책 포럼을
통한 대학의
의견 수렴

2. 고등교육 20대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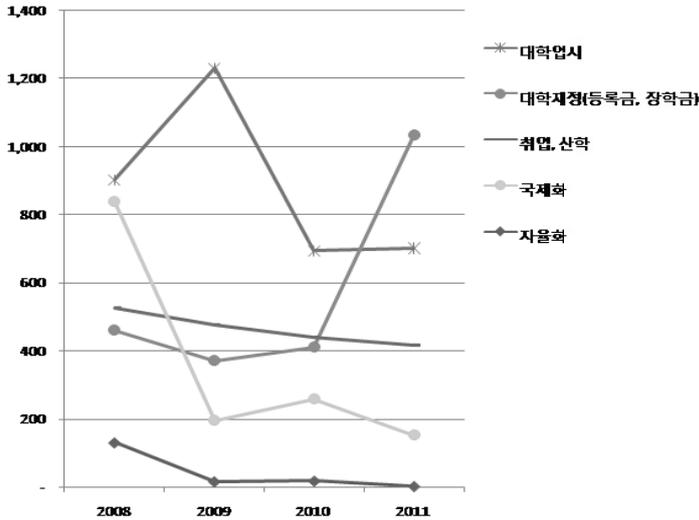
2-1. 언론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의 동향

2-2. 고등교육정책방향에 의견 수렴

2-3.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허브로서의 대학교육」 20대 정책 과제

2-1. 언론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의 동향

4년간 고등교육 관련 언론 보도 동향 (총 29797개)



- 4년간 상위 보도된 키워드는 대학입시, 대학재정(등록금, 장학금), 취업, 산학, 국제화, 자율화
- 2011년 이후 대학재정(등록금, 장학금) 관련 보도 급증
- 취업, 산학연계는 상시 관심 분야
- 대학자율화, 국제화, 대학입시는 언론 보도가 감소



2-1. 언론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의 동향

정당별 주요 고등교육정책 공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대학입시	기회균형선발 확대	현 체제 유지	-
대학등록금	(현재제 유지) · 등록금 부담완화 · 대학등록금자구노력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 지원 ·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 (2.9%) 및 성적제한 완화(CO)	(반값등록금 실현) · 반값등록금 실현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대학등록금역상한제 도입 ·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반값등록금 실현) · 반값등록금법제정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국립대학의 단계적 무상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제정	제정
대학구조조정	-	· 서울소재국립대학연구중심화 ·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연계 · 부실대학, 비리사학 국공립화 · 국립대학생 비중 확대 · 지방거점대학 육성	· 사립대특성화 · 국립대 정원 확대 · 지역거점 국립대특성화 집중육성
국공립대법인화	지방	반대	반대
대학연합	-	· 국공립대학연합체제 · 대학동맹네트워크 내에서 학점 교류, 학위취득 개방	· 국립대 동맹네트워크 설립 · 대학동맹네트워크 내에서 학점 교류, 학위취득 개방

2-2. 고등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특별위원회 고등교육 관련 현안 수렴 결과

<p>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특성화(국공립대·사립대 차별화) · 대학자율화(대학 구조조정·평가·입시자율화 포함) · 지역대학 균형 발전 · 대학운영의 유연화(재정 유연화 포함) 	<p>대학특성화 지역대학발전</p>
<p>대학재정 대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재정확보 제도 마련(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GDP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 상향조정·사학재정) ·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법안 제정 · 재정지원방식 안정화 및 재정자율화· 	<p>대학재정 강화</p>



2-2. 고등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p>법학전문 대학원 대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조분야 통합 · 법학전문대학원 추가 설치 	<p>대학원 역량강화</p>
<p>국·공립대 발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대와 사립대 역할 분담 · 국·공립대학원 발전 · 지역 국·공립대 지원 	<p>대학특성화</p>
<p>사학법 대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육성특별법제정(사학 자주성 포함) · 종교 사학법 	<p>대학자율화</p>



2-2. 고등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p>대학평가 대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평가지표 개선(대학의 특수성·지역성 고려) ·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평가방안 개선 · 외국인유학생 관리 인증평가지표 개선 	<p>대학자율화</p>
<p>국제화 대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의 세계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p>대학국제화</p>



2-2. 고등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고등교육연구위원회 방안

<p>산학연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계 교과과정 체계화 정책 수립 · 교육과 취업현상 연계 강화 · 인턴십 및 현장실습 체계 운영 · 지역 특성, 대학특성을 고려한 산학연계 모형 구축 	<p>대학국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고등교육 학위 인정 체제 구축 및 정보화 구축 · 대학국제화 멀티트랙 (대학원·학부·산학연계) · 지역 중심 · 고등교육 서비스 제공 확대 	<p>대학평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습성과 평가 도구 개발 ·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가시스템 · 대학교육의 질 개선 정도 측정으로의 대학 평가 지표 개선 	<p>대학재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제정 ·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법안제정 ·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안제정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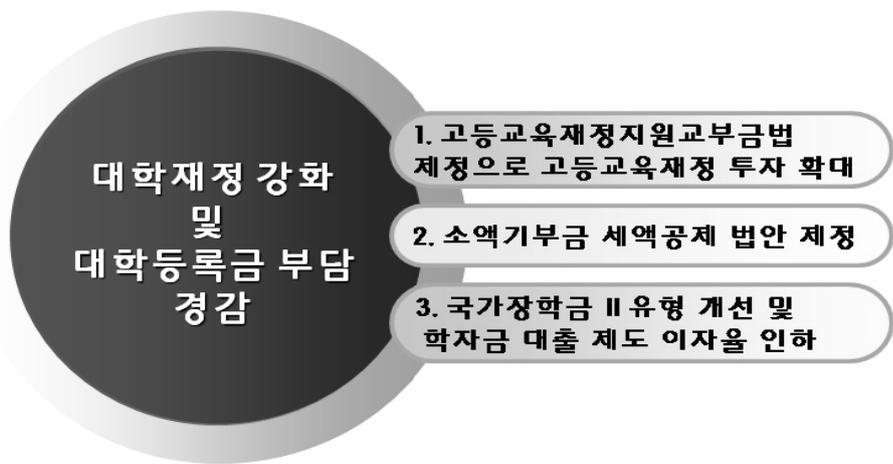


2-3.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 허브로서의 대학교육」 20대 정책 과제

방향	주요내용
대학재정 강화 및 대학등록금부담경감	1. 고등교육재정지원교부금법 제정으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2.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법안 제정 3. 국가장학금 II 유형 개선 및 학자금대출제도 이자율 인하
대학자율화	4. 대학자율성을 침해하는 법 제도 개선 5. 대학지원사업에서 대학자율화 보장 6. 대학의 자체 질관리 체제 강화
대학특성화 및 지역대학 육성	7. 대학 특성화(vocational university - academic university 등) 지원 8. 기초학문분야 육성 9. 지역거점대학 육성 10. 지역의 산업-지역 협력 운영 및 「지역인재발달제」 도입 11.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 제고
대학국제화	12.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 13. 「NIC(National Information Center)」 설립 및 대학국제화 정보체제구축 14. Campus Asia 확대 및 아태지역통합 글로벌 인재양성체제 구축 15. 해외 분교 설립 규제 완화 및 고등교육 해외 진출 정책지원 16. 국내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관리 체제 개선
대학원교육 역량강화 및 평생교육 역량강화	17.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 강화 18. 전문대학원 질 제고 및 제도적 지원 19. 직장인 재학습을 위한 인턴제 활용 기금 마련 20.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2-3.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 허브로서의 대학교육」 20대 정책 과제

* 대학재정 강화 및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2-3.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 허브로서의 대학교육」 20대 정책 과제

* 대학자율화 *

대학자율화

- 4. 대학자율성을 침해하는 법 제도 개선
- 5. 대학재정지원에서 대학자율화 보장
- 6. 대학의 자체 질관리 체제 강화

2-3.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 허브로서의 대학교육」 20대 정책 과제

* 대학특성화 및 지역대학 육성 *

대학특성화
및
지역대학 육성

- 7. 대학특성화(vocational university-academic university 등) 지원
- 8. 기초학문분야 육성
- 9. 지역거점대학 육성
- 10. 지역의 산업-지역 협력 운영 및 「지역인재할당제」 도입
- 11.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 제고

2-3.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 허브로서의 대학교육」 20대 정책 과제

* 대학 국제화 *

대학 국제화

12.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축

13. 「NIC(National Information Center)」
설립 및 대학 국제화 정보 체제 구축

14. Campus Asia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

15. 해외 분교 설립 규제 완화 및
고등교육 해외 진출 정책 지원

16. 국내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관리 체제 개선

2-3.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 허브로서의 대학교육」 20대 정책 과제

* 대학원교육 역량강화 및 평생교육 역량강화 *

대학원교육 역량강화 및 평생교육 역량강화

17.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 강화

18. 전문대학원 질 제고 및 제도적
지원

19. 직장인 재학습을 위한 인턴제
활용 기금 마련

20.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추후 회원 대학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방향에서 수정 가능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 허브로서의 대학교육」

감사합니다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반 상 진 교수(전북대학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에 대한 보완적 논의

-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 실현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차례

- ▶ I. 배경 및 필요성
- ▶ II.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
- ▶ III.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
- ▶ IV.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관련 주요 내용과 보완적 논의
 - ▶ 1. 교부금의 재원규모에 관한 논의
 - ▶ 2. 교부금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 3. 교부금의 교부신청 교부 거부 조항에 의거 대학 구조조정 유도
 - ▶ 4. 교부율의 보정 조항에 의해 대학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치 마련
 - ▶ 5. 교부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교부 방식의 합리성 도모

1.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 **고등교육재정은 자원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어 정권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왔음.**
- **고등교육재원의 불안정성은 대학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힘들게 하고, 그에 따라 대학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시키며, 나아가 재정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없음.**
- **18대 국회에서 김우남의원, 임해규의원, 권영길의원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바가 있었지만 19대 국회 들어 자동 폐기되었음.**
-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5월 30일에 민주통합당은 민생 공약 8대 의제와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1차 당론 발의했고, 그 중에 첫 번째 법안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임.**
- 이 법안 제정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제정의 필요성

- **대학이 정치권력, 행정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적 독립과 자율 운영"**
-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
- **고등교육투자의 최소수준 확보**
- **국가재정 여건 변화나 정치적 논리에 이끌리는 역기능적 요인 제거**
- **대학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 장기적 효과 제고**
- **자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유인할 수 있는 자율조정장치 마련**
- **공적자원 확충을 통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감소와 이를 통한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공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



II.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

반대론	대응 논리
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교육기관간 재정력 격차 존재. 국민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그 재정력의 격차를 시정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 고등교육기관은 당연히 교부금의 교부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학진학률이 80% 내외로 한국은 이미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 대학교육은 전문가 양성 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의 성격이 강화되었음.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칸막이 재정으로 비효율성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9위권인 경제규모인 한국이 대학투자 수준은 22위권으로 대학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른 국가에서는 시도하지 않지만 너무도 열악한 대학투자를 하는 국가인 만큼, 일정 적정 규모의 대학재정을 확보하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다른 국가에서 시도하지 않는 선도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 정권에 따라 추진하는 각종 국가시책사업의 비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재정 건전성 악화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함. - 따라서 대학투자 확대 문제는 투자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국가의 교육관에 대한 문제임.

반대론	대응 논리
대학개혁(대학구조조정)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등은 보통교부금과 달리 현행의 사업비 배분방식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교부되는 예산이므로 대학의 특성화도 살리고 구조조정 및 통·폐합도 저해하지 않음. - 사업교부금은 현재의 사업비 배분방식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학 특성화,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임. - 특히 대학경영이 부실하거나 사학법인의 법정 재단전입금의 전입이 부실한 경우 등에는 교부금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안 제7조제2항).

반대론	대응 논리
<p>사립대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p>-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한 지원이 대상이고, 사립대학은 국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임</p> <p>-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도 납세자이며,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도 똑같은 납세자임.</p>
<p>개별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결국 국대학교육은 평준화 됨</p>	<p>-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만을 반영하고, 연구비, 사업비, 특별한 시설비 등은 사업교부금으로 구분. 산정할 경우 평준화 우려는 기우</p>

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국회검토보고서(11.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비상대책실무위원회 내부자료, 발췌. 재정리 보안

Ⅲ.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

- ▶ ● **한국은 국가 경제력에 비해 고등교육투자가 매우 인색한 국가**
 - ‘2011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표 1>),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9,081로 OECD 평균 \$13,71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평균교육비의 약 70% 수준
 -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중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2008년 기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대부분 민간부문(1.9%)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실정
 - 그리고 한국은 2008년 GDP 규모가 1조 2,400억달러로 OECD 30개 국가 중 9위 차지하였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22위 차지

<표 1>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	1.5	2.4	3.1	1.3	1.5	1.1	
공공재원	1.0	0.6 (31위)	1.0	0.7	0.5	0.9	
민간재원	0.5	1.9 (2위)	2.1	0.6	1.0	0.2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	공공재원	69.1	20.7 (28위)	31.6	35.8	32.5	84.7
	민간재원	30.9	79.3 (2위)	68.4	64.2	67.5	15.3
학생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US\$(PPP환산액))	13,717	9,801 (22위)	27,010	15,463	14,201	13,823	
고등교육 평균재학 기간동안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누적 교육비(US\$(PPP환산액))	57,775	31,149 (19위)	m	67,153	59,500	61,896	

주 : 1) PPP(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s) : 구매력 평가기준 환율.
 2)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비율에는 전체 교육비에 대한 행정 경비비율 미포함.
 출처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통계는 2008년 기준임.

- <표 2>에서 보듯이, 지난 4년간 기준으로 4년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총세입 규모는 평균 26조 9,726억원
 - 그 중에서 국고지원 규모는 평균 4조 9,193억원(18.2%)
 - 재단전입금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이 9조 7,058억원(36.0%)
 - 나머지 등록금 수입이 12조 3,475억원(45.8%)으로 대부분을 차지
- 2011년 예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4년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총세입 규모는 28조 414억원
 - 그 중에서 국고지원 규모는 5조 501억원(18%)
 - 대학등록금 수입이 12조 8,606억원(45.9%)으로 대부분을 차지
- 따라서, 고등교육투자는 공적 지원보다는 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

<표 2> 부담주체별 고등교육투자의 규모

구분	총세입			국고지원 (대학예산)	대학등록금 수입(학생)			기타 (사회·법인)
	국공립	사립	총계		국공립	사립	총계	
2008	62,059	183,805	245,864 (100.0)	43,934 (17.9)	17,799	100,894	118,693 (48.3)	83,237 (33.9)
2009	71,996	196,331	268,327 (100.0)	51,947 (19.4)	18,787	102,571	121,358 (45.2)	95,022 (35.4)
2010	74,233	210,061	284,294 (100.0)	50,390 (17.7)	18,103	107,137	125,240 (44.1)	108,664 (38.2)
2011	73,200	207,214	280,414 (100.0)	50,501 (18.0)	19,041	109,565	128,606 (45.9)	101,307 (36.1)
평균	70,373	199,353	269,726 (100.0)	49,193 (18.2)	18,433	105,042	123,475 (45.8)	97,058 (36.0)

주: 1) 모든 수치는 결산금액 기준이고, 2011년은 예산임.
 2) 국·공립대 총세입은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총계임.
 3) 사립대 총세입은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학교기업회계의 총계임.
 4)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은 수업료 및 입학금, 기성회비를 포함한 금액임.
 5) 기타는 재산수입, 재단전입금(사립), 기부금, 수수료 수입 등을 포함한 금액임.
 6) 4년제 국공립 및 사립 일반대학, 교육대, 산업대, 방통대 대상임.
 출처 : 대학알리미;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Ⅳ.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관련 주요 내용과 보완적 논의

- 여기서는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촉구를 위한 보완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19대 국회에서는 아직 여당과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음.

1. 교부금의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

- 국내총생산(GDP)의 1.0% 달성을 위해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교부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교부금의 재원과 종류(제3조 제1항, 제2항)

가. 재원 및 규모(제1항) : 내국세 총액의 84/1000

-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1.0% 달성 기준
-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13년 6%, '14년 6.5%, '15년 7%, '16년 7.5%, '17년 8.4%로 단계적 인상(부칙 제2조)

나. 종류(제2항)

- 교부금은 보통교부금·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여 교부
-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 교부금의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

● <표 3>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수준을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총 대학생 수로 곱해 대학 총 공교육비 수준을 분석한 결과(반상진, 2011).

-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한국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는 \$10,607이고, 총 대학생 수를 고려하면 23조 2,939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하지만 2008년 실제 대학 총 공교육비는 18조 1,340억원으로서 5조 1,599억원 정도 추가 투자가 필요하였음.

- 2009년에는 OECD 국가기준으로 볼 때 5조 3,34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고, 2010년에는 6조 2,79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음.

- 이러한 추가 투입 규모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의 15.23%(GDP의 약 0.57%)의 추가 증액이 요구되는 규모임.



1. 교부금의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

<표 3> 연도별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추정 결과를 통한 총 공교육비(추정) 규모

연도	GDP (PPP, US\$)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PPP, US\$)	대학생 수 (명)	적정 대학 총 공교육비 추정 (단위: 억원, 환 율: 1,130원)	실제 대학 총 공교육비 (단위: 억원)	차이 (A-B)
2008	27,716	10,607	1,943,437	232,939	181,340	51,599
2009	27,938	10,700	1,984,043	239,891	186,548	53,343
2010	29,791	11,486	2,028,541	263,327	200,536	62,791

주: 1) 대학생 수는 재적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대학 공교육비 = 국공립대 교육비+국공립대 기성회계 예산액+사립대 교비회계 예산액(통계청 산출방식) 출처; 반상진(2011). "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추정 연구".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1. 교부금의 자원 규모에 대한 논의

- ▶ ●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고등교육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6조 2,800억원의 추가 고등교육 자원(교육예산의 15.23%, GDP의 0.57%)이 필요한 실정임.

- 2010년 기준 총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5조 390억원(실제 배분액) + 6조 2,800억원(추가 소요액) = 11조 3,190억원으로 추정

- 이러한 규모는 2010년 기준 내국세(총 128조원)의 8.84%임.

-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교부금 자원은 내국세의 9%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교부금 규모가 11.52조원으로서는 실제 국고지원 대학예산의 5조 390억원의 2.3배 증액된 수치임.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법(안)에서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교부 방식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1. 보통교부금의 교부방식(제5조, 제7조)

가. 보통교부금의 교부(제5조)

- (제1항) 국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통교부금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매년 산정하여 교부
- (제2항)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국·공립고등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 교부
- (제4항)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나. 보통교부금 교부협약 (제7조)

-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

1. 재학생 1인당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2. 중앙등록금채정위원회가 정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
3. 보통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할 의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부금의 교부방법, 교부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보통교부금 교부 신청 거부 조항

1. 고등교육기관의 경영이 부실한 경우
2.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고등교육기관 운영의 경비로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최근 3년간 평균 재학생수가 매년마다 학교규칙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전체의 50%에 해당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4.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내부 구성원 간 또는 법인 임원 상호간의 분쟁·소송 진행 등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금의 교부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2. 사업교부금의 교부방식(제6조)

가. 사업교부금의 교부(제6조)

- 사업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에서 보통교부금을 제외한 금액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사업 내용의 법제화)

1.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사업
2. 고등교육기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3.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5. 고등교육기관 간 통·폐합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
6. 고등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을 위한 사업
7. 고등교육기관의 해외교류사업을 위한 사업
8. 기초학문 지원 육성사업
9. 지역균형선발 및 계층균형선발 지원 사업
- ▶ 10. 그 밖에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
- 보통교부금 교부 대상이 모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보통교부금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지만, 사립대학에 운영비성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보통교부금 교부협약을 통해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총액 지원 방식)을 포함시켜야 함.

-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법안과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8.4%로 할 경우, 그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4조9520억원 (2011년 내국세 수입, 178조원)
- 따라서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교부 비율 : 60% : 40%

2. 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교부 비율에 대한 논의

- ▶ * 이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8조9,712억원, 사업교부금 5조9,808억원
- ▶ * 그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국립대학 3조6,600억원(총세입의 50%),
- ▶ 사립대학 5조3,112억원(총세입의 25.6%) 정도를 교부할 수 있음.

- ▶ ※ 2011년 기준 4년제 국·공립대학의 총 재정규모는 평균 7조3,200억원 중에서
- ▶ - 국고지원인 일반회계; 2조 5,177억원 (34.4%)
- ▶ - 산학협력단회계; 2조 5,597억원 (35.0%)
- ▶ - 기성회회계; 2조 2,426억원 (30.6%)

[교부금 확보에 따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I” ; 교부금으로 국고지원이 14조9,520억원(2.96배 증액)이 되고, 총세입과 기타 세입이 동일하다면 대학등록금은 1/4 수준으로 인하됨.

2. “시나리오 II” ; 교부금으로 국고지원이 14조9,520억원(2.96배 증액)이 되고, 기타 세입은 동일하며 대학등록금 수준이 1/2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대학의 총세입은 31조5,131억원으로 12.4% 증가됨.

<표 4> 고등교육투자의 규모 추정 시나리오

구분	총세입			국고지원 (대학 예산)	대학등록금 수입(학생)			기타 (사회,법인)
	국공립	사립	총계		국공립	사립	총계	
2011 (실제 규모)	73,200	207,214	280,414 (100.0)	50,501 (18.0)	19,041	109,565	128,606 (45.9)	101,307 (36.1)
시나리오 I (교부금을 등록금인하 에만 사용할 경우)	73,200	207,214	280,414 (100.0)	280,414 (100.0)	4,379	25,200	29,587 (10.6)	101,307 (36.1)
시나리오 II (교부금을 통해 등록금 50%만 인하할 경우)	82,262	232,867	315,131 (100.0)	315,131 (100.0)	9,521	54,783	64,304 (20.4)	101,307 (32.1)

주; 1)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재정 중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은 공립대학은 19.4%, 사립대학은 36.4% 수준임.
2) 그리고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은 공립대학인 경우 51%, 사립대학인 경우 16.2%임.

● 사업교부금은 국립대학과 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현행의 사업비 배분방식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교부되어 대학의 특성화도 살리고 구조조정 및 동·폐합도 유도할 수 있음.

3. 교부금의 교부신청 교부 거부 조항에 의거 대학 구조조정 유도

- 보통교부금 교부협약(제7조) 제2항에 의거 부실 및 비리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보통교부금 교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

4. 교부율의 보정 조항에 의해 대학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치 마련

- 법안 제4조(교부율조정)에 의거 고등교육재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등의 변동에 맞추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교부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교부 방식의 합리성 도모

- 법안 제8조(교부금심의위원회)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으로써 교부금의 합리적 교부를 기대할 수 있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송기창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관한 입장

송기창(숙명여대)

1. 민주통합당이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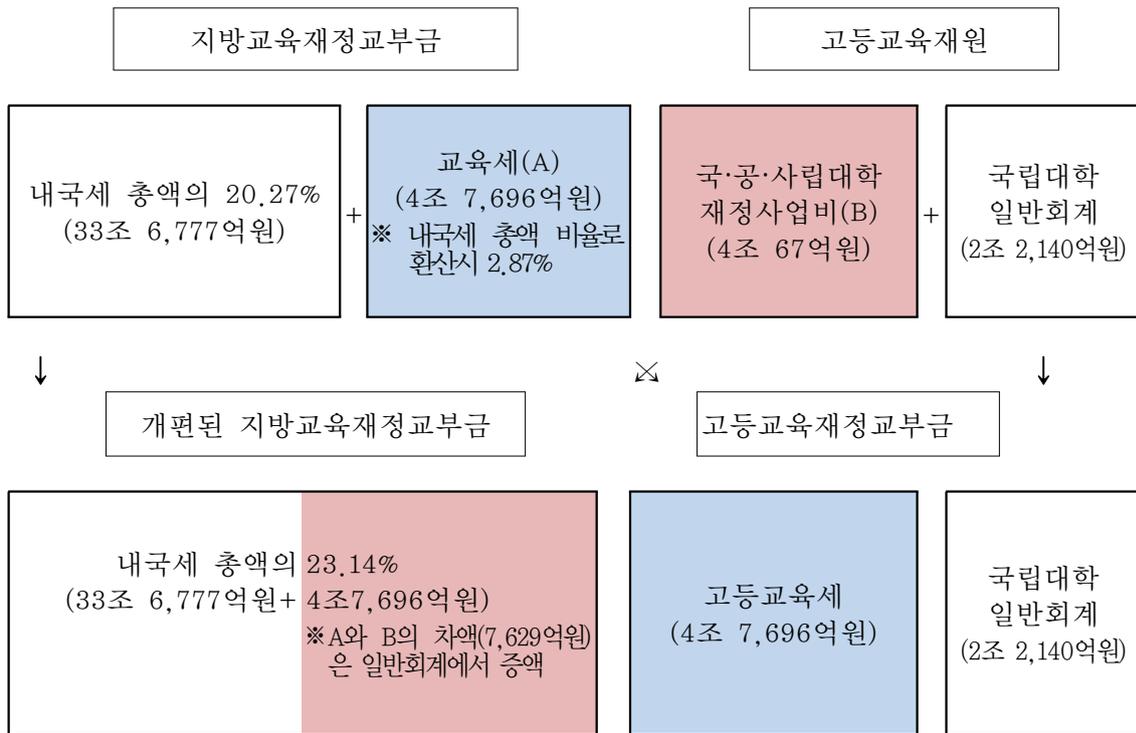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취지인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대학경상비의 총액 지원을 통한 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반값등록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제1조에서 교부금법의 목적을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고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대학경쟁력 강화’라고 밝히고 있으나, 법안의 내용은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대’, ‘국립대학의 불균형 발전’, ‘고등교육의 경쟁력 약화’를 담고 있음.
- 반값등록금 실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교부금의 기본개념(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조차 반영되지 못한 「국립대학 반값등록금 지원법」 성격을 가짐.
-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상비 지원을 ‘국립대학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안정화하고, 추가적으로 ‘보통교부금교부협약에 의한 보통교부금’(기성회비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보임) 지원을 보장하여 국립대학을 편중 지원하는 구조임.
-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국립대학 보통교부금을 1차로, 교부협약에 의한 보통교부금을 2차로 배정하고, 나머지를 사업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어서 고등교육재정 사업비의 규모가 매년 달라지는 문제, 즉 고등교육재원의 불안정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함.
- 국립대학 경상비가 늘어나고(국립대학 경상비 지원기준이나 지원규모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경상비 규모가 불확실함), 기성회비 보전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교부금이 줄어들어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재원이 매년 줄어들 가능성이 큼.
- 보통교부금교부협약을 통해 사립대학을 준국립대학(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음.
- 개별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가 지역여건, 교육여건, 가구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전공계열 및 학부별로 등록금표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교부금을 지원받는 대학은 등록금표준액

의 1.2배 범위내에서 등록금을 정하되,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등록금표준액은 기본적으로 국·공·사립간 구분없이 전공계열 및 학부별로 등록금을 정하기 때문에 국·공립에 비해 사립의 등록금 결손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별도의 등록금 보전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입장**

- 국·사립대간 기능적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학 우선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며, 고등교육의 성격이 엘리트 교육에서 보통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설립별로 차별적인 재정지원을 시정하는 장치로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치적으로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기는 하지만, 반값등록금법의 일환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설립별·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의 질이 보장되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야 함.
- 2011년 이후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를 일부는 반영할 필요가 있고, 등록금부담 완화 요구의 핵심은 국립대학 등록금이 아니라 사립대학 등록금이며, 국고지원을 통해 사립대학 등록금의 인하를 유도하려면 경상비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이 빠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생각하기 어려움.
- 종전에 국립대학 경상비를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하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임.
- 내국세의 일정률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할 경우, 재원이 명료한 장점은 있으나, 예산부처의 저항과 고등교육과 관계가 적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내국세 예산총액 166조 1,454억원

[그림 1]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할 경우 고등교육재원의 변화

3. 민주통합당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추진될 경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안으로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추진

가.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국립대학에 비해 빈약한 사립대학 국고지원 규모 확충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필요
-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인정 필요
-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과 한계 극복
- 교육재정법률주의의 구현

나.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의 주요내용

-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50% 이상을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의 지급기준, 보조범위, 지급절차, 지급제한 등 규정

- 사립대학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법상 우대조치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학 지원 근거 규정
- 사립대학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립대학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memo



memo



memo



memo

